

2020 간추린 改正稅法

2021

企劃財政部

머 리 말

2020년 우리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등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의 어려움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재정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선제대응을 세제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이 상이한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 하였고, 세제지원 대상 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 자산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23년부터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등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등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및 자산운용범위 등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고,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였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세형평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 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 및 개인과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법 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을 일원화 하고 일반 및 성실 공익법인으로 이원화된 사후관리를 일원화 하는 등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를 촉진하였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가산세의 종류·금액·산출근거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법인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이해도·가독성 제고를 위해 국세징수법, 주세법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통해 용어의 순화·정비 및 법령 위임체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20 간추린 개정세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내용이 포함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개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민과 기업, 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 및 관련 공무원들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목 차

[소득세법]

I. 총괄 · 사업소득

1. 신탁세제 개선	7
①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7
②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9
2. 서화 · 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10
3.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11
4.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12
5.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13
①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13
②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14
③ 과세방법 및 세율	15
④ 과세최저한 설정	16
⑤ 과세자료 제출의무	17
⑥ 신고납부방법	18
⑦ '21.12.31.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19
6.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20
7.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21
8.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22
9.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24
1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25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27
1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28
13.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29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30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31
16.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32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32
②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34
17.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36

II. 근로소득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37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39
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40
4.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	42
5.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43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44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46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47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48

III. 금융소득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49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	49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50
③ 정의 규정	52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53
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4
⑥ 세액 계산의 순서	55
⑦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56
⑧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57
⑨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58
⑩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	59
⑪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60
⑫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62
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63
⑭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64
⑮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65
⑯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67
⑰ 기준시가의 산정	68
⑱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69
⑲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70
⑳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71
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72
㉒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74
㉓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75
㉔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76
㉕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77
㉖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79
㉗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80
㉘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81
㉙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82

2.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83
3.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과세 신설 ·	84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85
5.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86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87
7.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	88
8.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89

[법인세법]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97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97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99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100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101
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102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103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104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105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106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107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108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	109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	110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111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12
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113
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114
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115
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	116
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117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118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20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121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122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123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124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125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126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127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128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129
19.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130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130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131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132
④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	133
20.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134
2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135

22.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	136
23. 가상자산 규정 정비	137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	137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138
24.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139
25-1.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140
25-2.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규정	141
2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142
2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144
28.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145
29.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146
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147
31.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148
32.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149

[양도소득세]

I. 양도소득세 분야

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157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58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	159
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160
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161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162
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163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63
②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164
③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165
④ 상속·혼인·동거분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66
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167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167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168
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169
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170
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171
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	172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73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174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175
16.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176

17.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177
1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178
19.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79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임주권·분양권 포함)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	180
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	182
2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보유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184
23.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86
24.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187

II. 법인 양도 분야

1.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188
2.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190
3.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191
4.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192
5.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	193

[종합부동산세]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 의무 신설	199
2.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200
3.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법인 보유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201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	203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204
6.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205
7. 주택분 세 부담 상한비율 변경	206
8.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	207
9.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2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신탁세제 개편	213
①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213
②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214
③-1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215
③-2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216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217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217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218
③-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219
③-2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220
④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 비치 의무 대상 명확화	221
⑤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222
⑥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223
⑦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225

⑧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	226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227
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228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229
6.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230
7.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231
8.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232
9.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233
10.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제출 의무 추가	234

[조세특례제한법]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	245
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조정	246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7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248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	248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249
③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50
5.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251
6.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53

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254
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55
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256
1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257

III.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58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258
②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260
③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61
④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262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263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264
1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265
1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66
14.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	267
1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	269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정비	270
1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271
1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272
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73
2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274

21.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	275
22.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276
23.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277
24.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278
25.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279
26.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280

IV.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7.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281
28.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282
29.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3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84
31.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85
3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86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87

V. 공익사업지원 및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88
35.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	289
36.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	290
3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91
38.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92

3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93
40.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개편	294
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295
① 비과세 요건 개선	295
② 적용기한 폐지	296
③ 운용기관 · 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297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 · 원천징수 기준일 조정	298
⑤ 계약기간 만료 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	299
42.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00
43.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시점 보완	301
4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	302

VI.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45.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303
4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304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304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306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	307
④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308
47.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309

48.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310
4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민간 임대특별법 개정 반영 및 일몰 단축 등	311
5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312
5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	313
5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314
5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315
5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316
55.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	317
56. 근로·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318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318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	319
③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320
5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 가구 편의 제고	321
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321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322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323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324
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325
58.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326
①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	326
②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관련 조문 정비	327

③ 근로·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	328
④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328
5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29

VII.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60.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330
61.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31
6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332
6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333
6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	335
6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336
66.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337
67.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338

VIII. 간접국세

68.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339
6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1
7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342
7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3
72.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3
73.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4
74.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344
75.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5

7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345
77.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6
7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46
79.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47
8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47
8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348
8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349
8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등	350
8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51
8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351
86.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352
87.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신설	353
88.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354

IX. 기타

89.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과세특례 합리화	355
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시장조성 상품 재설계	355
②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356
90. 입국장 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대상 등 명확화	357
91. 입국장 인도장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357
92.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358

9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359
94.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360
9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361
96.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362
97.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363
9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365
9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366
10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	367
101.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통합·명확화	368

[농림특례규정]

1.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 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	375
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376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377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377
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대상 농기자재 등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378
6.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379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율 인하	385
--------------------	-----

[교육세법]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391

[국제조세분야]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397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제도 개선 399
 - ①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399
 -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400
 - ③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401
3.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제출기한 연장 등 · 402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403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404
6.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405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406
8.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407
 - 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407
 -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409
 - ③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410
 - ④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절차
규정 411
 - ⑤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 412
9.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도 개선 413

①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413
②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	414
③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입법 ..	415
10.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416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417

II.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제도 정비	418
①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허용	418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419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420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421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423
3.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424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25
5.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427
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	429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431

[부가가치세법]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437
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437

②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438
③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	439
④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	440
⑤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441
2.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442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443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443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444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445
④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446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447
⑥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448
⑦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449
⑧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450
⑨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451
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452
⑪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453
⑫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454
⑬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455
⑭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456
⑮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457
⑯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458
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	459
⑱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	460

①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461
②0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규정	462
4.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463
5.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	463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464
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	465
8.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465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	466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467
1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468
1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469
1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	470

[인지세법]

1.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규정 삭제	475
2.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 추가	475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	481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폐지	482
3.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	483
4.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484
5.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485
6.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486

[주세법]

1.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	491
2. 주류 위탁 제조 요건, 위탁 제조 주류의 납세의무자 등 신설 ..	492
3.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	493
4.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494
5.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495
6.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및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496
7.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497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498
9.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499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류 위탁제조 관련 신고의무 신설	505
2.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506
3.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	507
4.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508
5.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509
6. 주류 제조·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510
7.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	511
8.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512
9.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513
10.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514
11.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515

[국세기본법]

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521
2.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522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523
4. 양도담보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의 연장을 국기법으로 이관 ..	524
5. 납부의 방법 정비	525
6.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526
7.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	527
8.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	528
9.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529
10.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530
1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531
12.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532
13.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533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534
15.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535
16.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536
17.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537
18.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	538
19.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539
20.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540
21.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541
22.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542

23.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543
2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544
25. 부분조사 사유 확대	545
26.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546
2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547
28.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548
2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	549
3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550

[국세징수법]

1. 국세징수법 새로 쓰기	555
①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555
②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변경	556
③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	557
④ 매수인측 용어 정비	558
⑤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559
2.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 정의 신설	560
3.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561
4. 압류, 수색, 질문·검사 시 집행절차 개선	562
5. 압류금지 재산의 정비	563
6.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	564
7. 압류 후 추심·매각의 착수시기 신설	565
8. 공매 중지·체납처분 중지를 압류 해제로 일원화	566
9.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567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568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569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의 배분의 실시 명문화	570
1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571
14.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	572
15.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	573
16. 국세채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신설	574
1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575

[관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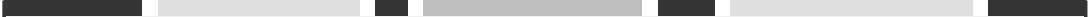
1.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583
2. 채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	584
3.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585
4.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586
5. 서울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	587
6.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588
7.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	589
8.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	590
9.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591
10.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592
11.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	593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594
13.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	595
14.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596

15.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	597
16. 보세운송업자 보고사항 추가	598
17. 통관 관련 제도 개선	599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	599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	600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601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602
18.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603
19. 탁송품 통관절차 개선	604
20.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	605
21.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	606
22.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607
23. 관세행정을 위한 연구개발 근거 마련	608
24.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609
25. 관세법령 용어 정비	610
26.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	611
27. 항공운임 관세특례 법령화	612
28. 통상운임 의미 및 적용대상 명확화	615
29.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616
30.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617
31. 원심 본조사 기간 추가 연장	619
32. 국내산업 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 제외	620
33. ‘덤핑’ 용어의 WTO 협정 합치	621
34. 구두 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	622
35. 재심 요청요건 WTO 합치	623

36. 상계관세 규정 정비	624
3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627
38.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확대	628
39.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규정	629
40.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마련	630
4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631
42.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632
43. 특수관계자가 생산한 생산지원비용 산출방법 개선	633
44.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 확대	634
45.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635
46.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636
47.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637
48.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 확대	638
49.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 절차 법제화	639
50.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640
5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	641
52. 여행자 신체 착용·휴대물품 기본면세범위 제외 명확화	642

[관세사법]

1.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647
2.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수임 등 제한	648
3.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649
4.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가	650
5.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651



소득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I. 총괄·사업소득

1. 신탁세제 개선

- ①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②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

2.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3.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4.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5.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①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 ②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 ③ 과세방법 및 세율
- ④ 과세최저한 설정
- ⑤ 과세자료 제출의무
- ⑥ 신고납부방법
- ⑦ '21.12.31.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

6.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7.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8.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지정요건 정비

9.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

1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

1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수입금액 범위 명확화

13.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16.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②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17.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

II. 근로소득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4.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
5.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III. 금융소득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
 -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 ③ 정의 규정
 -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 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⑥ 세액 계산의 순서
 - ⑦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 ⑧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 ⑨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 ⑩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
 - ⑪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 ⑫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 ⑭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 ⑮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 ⑯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 ⑰ 기준시가의 산정
 - ⑱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⑲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⑳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
 - 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 ㉒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 ㉓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㉔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㉕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 ㉖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㉗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㉘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㉙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2.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3.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과세 신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를 합리화
5.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7.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
8. 양도소득 부담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757호(2020.12.29.), 제17925호(2021.3.16.)
- 대통령령: 제30395호(2020.2.11.), 제31442호(2021.2.17.), 제31659호(2021.5.4)
- 기획재정부령: 제848호(2021.3.16.), 제855호(2021.5.17)

I. 총괄 · 사업소득

1. 신탁세제 개선

① 신탁소득에 대한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소득법 §2의3, 소득령 §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지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2) 개정이유

-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위탁자가 실질수익자인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신탁의 소득구분(소득법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의 구분 ○ 소득원천별로 구분 ○ 소득원천별 구분의 예외 - 집합투자기구인 신탁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추 가>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 (좌 동) - 신탁재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신탁

(2) 개정이유

-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소득원천별 소득구분 방식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 (소득법 §12, §21, 소득령 §41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 세율 20% ○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인 회화·대생 등 미술품 (생존 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 소득구분 명확화 ○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①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②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좌 동)

(2) 개정이유

-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좌 동)

(2) 개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소득칙 §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 공동소유 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해서도 주택수가 가산되는 경우 * [원칙] 공동소유 주택의 최대지분자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단, 최대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① 소수지분자의 공동소유 주택 임대 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 지분율 ②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공동소유지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에 대한 주택수 판단기준 명확화 ① (좌 동) - (공동소유 주택 임대소득) 공동소유 주택의 전체 임대소득 수입금액 (전세보증금등에 따른 수입은 제외) × 지분율 ② (좌 동)

(2) 개정이유

-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기준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①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소득법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의 범위 ○ 상금, 복권당첨금, 사행행위 참가 이익, 경마환급금, 슬롯머신등 당첨금 등 ○ 저작권, 광업권 등 자산·물품·장소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원고료, 재산권 알선 수수료, 사례금, 인적용역소득, 위약금, 보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등 <추 가>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개정이유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소득령 §51,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총수입금액 :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함

(2) 개정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방법 및 세율(소득법 §14, §55의2, §92, §1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원천징수) ① 연금 외 수령 소득 : 15% ②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20% ③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슬롯머신등 당첨금품 : 20%(소득금액 3억원 초과분은 30%) ☐ 종합과세(신고) ④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 금품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⑤~⑦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⑤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 원천징수 미대상 ⑥ 공제부금 해지일시금 : 15% ⑦ ①~⑥외의 기타소득* : 20% * 상금, 저작권·영화필름 등 자산·물품 등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 <추 가>	(좌 동) ☐ 원천징수 하지 않고 분리과세 ○ 세율 : 20% ○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2) 개정이유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및 세율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과세최저한 설정(소득법 §8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승마투표권 등 : 권면표시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 10만원 이하 ○ 슬롯머신 등 당첨금(수입금액) : 건별 200만원 이하 ○ 기타 : 건별 소득금액 5만원 이하 <추 가>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최저한 설정 (좌 동) ○ 과세기간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⑤ 과세자료 제출의무(소득법 §164의4, 소득령 §21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과 ○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 제출의무 정보 ○ 회원정보: 성명, 주민번호, 현금 입·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번호 등 ○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 과세표준, 거래일자 등 ○ 취급업소 간 / 취급업소와 개인지갑 간 가상자산 이전의 경우 등 : 이전한 가상자산 수량, 이전 시점의 시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등 ○ (제출 주기) : 분기별 / 연도별 제출

(2) 개정이유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⑥ 신고납부방법(소득법 §72, §7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신고기간: 5.1. ~ 5.31.

(2) 개정이유

- 신고납부 절차, 적용시기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⑦ '21.12.31. 의제 취득가액 평가 방법(소득법 §37⑤, 소득령 §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 시행 전 취득한 가상자산을 취급업소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 시가로 취득가액 조정 허용 : Max(시행일 시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등) ☐ '21.12.31. 당시의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들이 '22.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①외의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2.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2) 개정이유

- 의제 취득가액 적용을 위한 시가 평가 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6.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 연 1.8%	☐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2) 개정이유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칙) '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법인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경과조치

- '21.3.16.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7.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명칭 ○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1) 개정내용

– 22 –

(2) 개정이유

- 공익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❶) '21.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요건❷)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간) '22.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공익단체) 취소요건 정비(소득령 §8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취소요건 ❶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❷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❹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❺ 단체가 해산한 경우 <신 설>	☐ 취소요건 정비 ❶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외 회계감사 의무(상증법§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 (좌 동) ❷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개정이유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과 의 정합성 제고 및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사후관리 합리화 (소득법 §64의2, 소득령 §1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 세액 계산 방법 ① 일반적인 경우 $\text{세액} = [\{\text{주택임대소득} \times (1 - \underline{50\%})\} - \underline{200\text{만원}^*}] \times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②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text{세액} = [\{\text{주택임대소득} \times (1 - \underline{60\%})\} - \underline{400\text{만원}^*}] \times 14\%$ * 주택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③ 분리과세와 소형주택 임대 소득 특례(소득법§96)를 받는 경우 $\text{세액} = \text{① 또는 ②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소득법§96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 금액}$ ○ 의무임대기간(사후관리) ②의 경우: 4년 ③의 경우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추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필요경비 우대(②) 또는 감면(③) 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좌 동) ○ 의무임대기간 연장 ②의 경우: 10년 ③의 경우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사후관리 적용 배제 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20.8.18.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하는 분부터 적용

1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1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 이자·배당·근로·연금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사무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 (좌 동)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8 –

13.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추가신고 요건 명확화(소득령§1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시에도 기한 내 확정 신고로 인정하는 요건 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변동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②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한 물품가격인상으로 총수입금액 변동시 : 추가로 신고한 경우 ③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오류 발생시 : 추가신고납부를 한 경우 ④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아 소득금액 변동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신고기한 이후 신고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 ① 신고납부 → 신고 ② (좌 동) ③ 추가신고납부 → 추가신고 ④ 신고납부 → 신고

(2) 개정이유

- 기한 내 확정신고로 인정되는 요건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210의3①, [별표 3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좌 동)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2) 개정이유

-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소득령 §21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3억 원 → 2억 원 이상

(2)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16.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①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 §16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개정이유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②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소득령 §147의7, 법인령 §1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 1개월로 개정	
< 신 설 >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5%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개정이유

-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17.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득령 부칙 제30395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다음의 경우 '21.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 개정이유

- 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특례 마련

II. 근로소득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 받은 이익은 제외 ○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신 설>	☐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 단서 삭제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2) 개정이유

-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 「조세특례제한법」 §18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득령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 원 ○ 적용 대상 1)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 미용·숙박·조리·음식·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1) (좌 동) 2)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삭 제>

(2)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득령 §17의4 신설, §12, §18, §3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범위 ○ 기밀비 등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치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등 ○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추 가>	☐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 (좌 동)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소득 비과세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 법규의 준수 등을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 <추 가>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삭 제> ○ (좌 동) ○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 제안으로 선발되어 받는 부상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2) 개정이유

-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요건 구체화(소득칙 §9의2 신설, §15의2 삭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택의 범위(현행 §15의2) ○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사택의 범위(§9의2로 이관) ○ (좌 동)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범위 ○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	☐ 소액주주의 범위 조정 ○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

(2) 개정이유

- 사택제공이익이 비과세 되는 소액주주인 임원의 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추 가>	☐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좌 동) ○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i)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 동포로서, ii)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2) 개정이유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정이유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❷ 분양권 취득)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❸ 차입금 연장) '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2)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소득법 §81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2) 개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①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 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98%×35%)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 × 98% ×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69,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85,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 자녀세액공제 기준 -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 개정이유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변경
(7세 미만 제외, '18년 법 개정사항)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금융소득

1.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① 금융투자소득 신설(소득법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의 구분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신 설>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신설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확보

*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소득은 과세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 손익통산·이월공제를 통한 실질소득에 과세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소득법§17①, 소득령 §26의2, §150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평가손익은 유보 가능 ③ 금전으로 위탁·환급 <추 가>				☐ 신고요건 추가 ○ (좌 동) ④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 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 적격 집합투자기구				☐ 소득 구분 개편 ○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계약형</th> <th colspan="2">회사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분배·환매</td> <td colspan="3">배 당</td> </tr> <tr> <td rowspan="4">양도</td> <td rowspan="2">국내 상장</td> <td rowspan="2">주식형 ETF</td> <td>과세 제외</td> <td>대주주 양도</td> </tr> <tr> <td>과세 제외</td> <td>소액주주 과세 제외</td> </tr> <tr> <td rowspan="2">기 타</td> <td>배당</td> <td>대주주 양도</td> </tr> <tr> <td>과세 제외</td> <td>소액주주 과세 제외</td> </tr> <tr> <td colspan="2">비상장</td> <td>배당</td> <td colspan="2">양도</td> </tr> <tr> <td rowspan="2">국 외</td> <td>등록</td> <td>배당</td> <td colspan="2">양도</td> </tr> <tr> <td>미등록</td> <td>양도</td> <td colspan="2">양도</td> </tr> </tbody> </table>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 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도	과세 제외	소액주주 과세 제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도	과세 제외	소액주주 과세 제외	비상장		배당	양도		국 외	등록	배당	양도		미등록	양도	양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소 득</th> </tr> </thead> <tbody> <tr> <td>분 배</td> <td>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td> </tr> <tr> <td>환매·양도</td> <td>원천: 금융투자소득 외 배 당 금 융 투자소득</td> </tr> </tbody> </table>				구 분	소 득	분 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환매·양도	원천: 금융투자소득 외 배 당 금 융 투자소득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 당																																															
양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도																																													
			과세 제외	소액주주 과세 제외																																													
	기 타	배당	대주주 양도																																														
		과세 제외	소액주주 과세 제외																																														
비상장		배당	양도																																														
국 외	등록	배당	양도																																														
	미등록	양도	양도																																														
구 분	소 득																																																
분 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환매·양도	원천: 금융투자소득 외 배 당 금 융 투자소득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계약형</th> <th colspan="2">회사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분배·환매</td> <td rowspan="3">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td> <td colspan="2">배 당</td> </tr> <tr> <td rowspan="2">양도</td> <td>장내</td> <td>대주주 양도</td> </tr> <tr> <td>장외</td> <td>과세 제외</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양 도</td> </tr> </tbody> </table>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장외	과세 제외			양 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소 득</th> </tr> </thead> <tbody> <tr> <td>분배</td> <td>배 당</td> </tr> <tr> <td>환매·양도</td> <td>금 융 투자소득</td> </tr> </tbody> </table>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양도	금 융 투자소득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도	장내		대주주 양도																																														
	장외		과세 제외																																														
		양 도																																															
구 분	소 득																																																
분배	배 당																																																
환매·양도	금 융 투자소득																																																
○ 국외 집합투자기구				○ 국외 집합투자기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약형</th> <th>회사형</th> </tr> </thead> <tbody> <tr> <td>분배·환매</td> <td colspan="2">배 당</td> </tr> <tr> <td>양 도</td> <td>배 당</td> <td>양 도</td> </tr> </tbody> </table>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 당		양 도	배 당	양 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소 득</th> </tr> </thead> <tbody> <tr> <td>분 배</td> <td>배 당</td> </tr> <tr> <td>환매·양도</td> <td>금융투자소득</td> </tr> </tbody> </table>				구 분	소 득	분 배	배 당	환매·양도	금융투자소득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환매	배 당																																																
양 도	배 당	양 도																																															
구 분	소 득																																																
분 배	배 당																																																
환매·양도	금융투자소득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평가손익은 과세제외				< 삭 제 >																																													

(2) 개정이유

- 집합투자기구의 성격에 맞게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 소득의 소득구분
 -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집합투자증권 양도·환매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정의 규정(소득법 §87의2 신설, 소득령 §150의2, §150의3, §15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용어의 정의 ○ (주식등) 「자본시장법」 §4④ 지분증권, 「자본시장법」 §4⑧ 증권예탁증권으로 지분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 다음의 증권은 제외 · 「자본시장법」 §9②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소득세법」 §94①4에 따른 부동산 관련 주식 ○ (채권등) ❶「자본시장법」 §4③ 채무증권, ❷「자본시장법」 §4⑧ 증권예탁증권으로 채무증권 관련 권리가 표시된 것 등 - 다음의 증권은 포함 · 「자본시장법」상 조건부자본증권 ·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 ○ (양도) 자산의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 *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양도로 규정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필요한 개념 규정

*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되, 현행 세법상 과세대상의 차이를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소득법 §8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개정이유

- 공익신탁의 이익 등 비과세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법 §87의4, 소득령§150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기간 및 공제방법 ○ (공제기간) 5년 ○ (공제순서) 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②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공제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방법 ○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거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으로 모두 공제된 경우 미적용

(2) 개정이유

-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실질소득에 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세액 계산의 순서(소득법 §8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①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 세율 ②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③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순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소득법 §87의6, 소득령 §150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❶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❷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❸ 투자계약증권(「자본시장법」 §4⑥)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소득 ❺ 파생결합증권(「자본시장법」 §4⑦)으로부터의 이익 ❻ 파생상품(「자본시장법」 §5)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 국외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자만 해당)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이자·배당소득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⑧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령 §150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대금을 청산한 날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 대금을 청산한 날 (양도) - 이익을 지급받은 날 (환매·해지·해산) ○ 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금융투자소득에서 분배받은 금액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은 날 ☐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반대거래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손익이 확정된 날 *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

(2) 개정이유

-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수입시기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⑨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소득법 §87의7·87의17, 소득령 §150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집합투자기구·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소득금액(손실금액)을 ① 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합산 - ① < 0, ② < 0 : 금융투자결손금 - ① > 0, ② < 0 또는 ① < 0, ② > 0 :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 ① > 0, ② > 0 : 금융투자소득금액(단, 구분하여 관리) □ 비과세·감면 소득의 손실금액 계산 ○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 ○ 감면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은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 같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소득과 손실을 우선 합산하고 비과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파생상품소득의 손실공제 제한(소득령§150의10, 소득칙§69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파생상품소득의 손실 인정 한도 = ❶ + ❷ ❶ 위탁증거금(계약체결 시 납입) ❷ 계약 종료 전 투자자가 납입한 금액으로서 손실변제 사용된 금액

(2) 개정이유

- 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손실의 한도가 없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소득법 §87의8~12, 소득령 §150의11~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 주식등소득금액 = 주식등양도가액 - 필요경비 ○ 채권등소득금액 = (채권등양도가액 -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 필요경비 ○ 같은 계좌에서 양도하는 같은 자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
<신 설>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 ○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취득 이후 소송비용 등), 양도비, 증권거래세 등 ☐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 (대상) '22.12.31. 기준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가액) $\text{Max}(\text{'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가액})$ ☐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 (주식) 이동평균법 ○ (채권)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법) ○ (투자계약증권) 개별법

(2) 개정이유

-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주식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의제취득가액 도입

* 소득금액은 계좌별로 계산하는 것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⑫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법 §87의13, 소득령§150의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소득법 §87의14, 소득령 §150의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❶ + ❷ ❶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양도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② 기타: 환매 시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③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❷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분배소득금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투자소득 ② 기타: 결산 시 기준가격 - 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2) 개정이유

-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및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계산방법 규정
* 자본시장법상 기준가격을 통해 소득금액 계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⑭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소득령 §150의18, 소득칙 §69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①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B - C)$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② 기타 집합투자증권(①, ③ 제외): 매수 시 기준가격 = $A - (B - C \pm D)$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D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③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Max($A - (B - C)$, 실제 취득가액)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경우 (B-C)를 0으로 함

(2) 개정이유

- '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23년 이후 실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법 §87의15, 소득령 §150의19~20, 소득칙 §69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 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상환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①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 : 상환시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 B) \times C \times D]$와 0 중 큰 금액 - E A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증권의 행사가격 C :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③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text{Max}(A - (B - C), \text{실제 취득가액})$ A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B-C)를 0으로 함
--	---

(2) 개정이유

-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 '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ETN 이익에 대해 '23년 실현시에도 비과세될 수 있도록 의제취득가액 도입

* ELS, DLS, ELW는 현재도 과세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⑩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소득법§87의16, 소득령§150의21, 소득칙§69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 선물 $\text{소득금액} = (A \times C + B \times C) \times 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 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은 -1 D: 거래승수 ○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옵션) 반대거래상계 $\text{소득금액} = (A \times C + B \times C) \times D$ A: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 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 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 거래승수 ○ (옵션)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 소멸 $\text{소득금액} = [(A - B) \times C \text{와 } 0 \text{ 중 큰 금액} - D] \times E \times F$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콜옵션은 1, 풋옵션은 -1 D: 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 거래승수 F: 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 ○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 = ① + ② ① 위탁매매 수수료 ② 투자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2) 개정이유

- 파생상품 성격에 맞게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장외파생상품은 상대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⑪ 기준시가의 산정(소득법 §87의17, 소득령 §150의22~23, 소득칙 §69의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등의 기준시가 ○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단,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은 제외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주식 ○ (비상장 및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할인을 등을 감안한 평가액 ☐ 채권등의 기준시가 ○ 「상증세법」 §63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2) 개정이유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등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⑮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소득법 §87의18, 소득령 §150의24·26, 소득칙 §69의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 5,000만원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①+②)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 ② 집합투자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에 투자 ☐ 국내상장주식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산 ① 국내상장주식 ② 국내주식형 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 ☐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①, ②에 투자 시 투자금액 계산 투자금액 = A + B A: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①, ②의 가액 B: 공모 증권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①, ②의 가액 ÷ 다른 공모 국내주식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2) 개정이유

-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형 펀드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⑬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소득법 §87의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 대주주 - 1년 미만 보유 非중소기업 주식: 30% - 일반: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소액주주 - 중소기업 주식 : 10% - 일반 : 20%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 펀드 환매·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배당소득세 세율 ○ (2천만 원 초과) 14~42% ○ (2천만 원 이하) 14%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 20% (탄력세율 10%)	

(2) 개정이유

-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2단계 세율 구조 설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소득법 §87의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액 계산방법 $\text{감면액} = \text{㉑} \times \frac{(\text{㉒} - \text{㉓})}{\text{㉔}} \times \text{㉕}$ ㉑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㉒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㉓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㉕ 감면율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세 감면 시 계산방법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㉑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

(소득법 §87의21·§87의22, 소득령 §150의27~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의 예정신고 및 납부 ○ (대상) ❶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❷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기간) 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ii)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 채무액으로 양도로 보는 경우: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및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 금융투자결손금신고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일반적인 경우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times C$$

A : 금융투자소득금액

B :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기관 미공제시)

C :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세액과
합산신고 하려는 경우

$$\text{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times D] - E$$

A :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기관 미공제시)

D :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

E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개정이유

○ 납세의무 확정 및 납세절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금융투자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

(소득법 §87의23·§87의24, 소득령 §150의30·§150의3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및 납부 ○ (대상) ❶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❷환급세액이 있는 자, ❸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❹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방법)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세액납부 ☐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금융투자상품 거래 계약서 사본*, 양도비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2) 개정이유

- 원천징수, 예정신고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확정 신고를 하도록 납세절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소득법 §87의25, 소득령§150의32~3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자의 무신고 ○ 예정신고,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오류 ○ 증빙서류로 신고내용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과세관청은 결정·경정 내용 통지 ☐ 과세관청의 거래명세 조회 ○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확인 등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법인 등에 조회 가능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④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소득법 §87의2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금융투자소득세의 징수 ○ 납세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 징수 또는 납부된 세액이 결정·경정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 금융투자소득세의 환급 ○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세액을 환급 또는 다른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조세징수 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소득법 §127~129 개정, §148의2, 소득령 §203의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 개요 ○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대리·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 ○ (기간) 반기별*(1.1.~6.30. / 7.1.~12.31.) 원천징수 * 중도 해지 계좌 : (상반기) 1.1일 ~ 계좌해지일 (하반기) 7.1일 ~ 계좌해지일 ○ (세율) 20% ○ (납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법 ❶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손실금액)을 기본공제 그룹별로 구분*하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 별로 합산 * ①국내 상장주식 등 소득금액(5,000만원 공제) / ②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250만원 공제) ❷ 실지명의별·기본공제 그룹별로 합산된 소득 금액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❸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 하여 원천징수세액 계산 * 기본공제 적용 후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음

	☐ 결손금 이월 ○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 ☐ 원천징수 세액의 정산 ○ 상·하반기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연간 원천징수세액* → 초과액을 환급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 기본공제 적용 신청 ○ 기본공제 그룹(5,000만원/250만원) 각각에 대해 하나의 금융회사에만 기본공제 적용 신청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6.30, 12.31)까지 신청(동일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융회사 변경 불가)
--	---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조세채권 조기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소득법§148의3, 소득령 §203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경우 인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이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 - 다만,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중도 해지 계좌 :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간주 통지 ○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 ○ 금융회사등이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자번호 등을 정보통신 등으로 통보 ☐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기준 ○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소액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금융투자결손금 통지 ○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금융투자결손금의 경우에도 통지 의무 부여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금융투자소득과 원천징수 세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법 §15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별 과세가 적용되는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추 가> ○ (원천징수 시기) - 이자·배당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 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 <신 설>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금융투자소득 추가 및 원천징수 시기 일원화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 및 납부 (§148의2, §148의3 준용) ※ §148의2에 따른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구분 하여 징수(손익통산 불가)

(2) 개정이유

- 특정금전신탁 등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소득법 §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대상자)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 ○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추 가> ○ (제출기한) -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 <추 가>	☐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 (좌 동) -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소득자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㉔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의무
(소득법 §174의2, 소득령 §22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 ○ 금융투자업자는 다음의 자료를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K-OTC에서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거래내역으로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신 설>	☐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보관 의무 ○ 금융회사등은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장내·외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 거래내역 제출의무 ○ 금융회사등은 국세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 ☐ 금융회사등의 보관의무 자료 ○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 계좌별 거래 명세서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 매매 거래에 대한 거래 명세서 ○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 거래 명세서 ○ 장외거래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중개·주선, 대리 명세서 등 ☐ 국세청장이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는 자 ○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등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자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소득법§16①·§1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채권·예금 등의 이자·할인액 등 <추 가> ○ 배당소득 - 법인으로 부터 받는 배당, 의제배당 등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파생결합사채 소득 구분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과세 신설 (소득법 §17① ·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의 유형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 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소득법 §12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u>'20.12.31일까지 14%</u>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42% ○ (기타 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세율 특례 영구화 ○ (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u>14%</u> (좌 동)

(2) 개정이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화에 따른 세율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유지 (소득령§157·167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 *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여 지분율 또는 종목별 보유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0.4.1. ~ '21.3.31. 양도 시			□ 종목별 보유액 요건 10억원 유지 ○ '20.4.1. ~ '22.12.31.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피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 '21.4.1. 이후 양도 시			<삭 제>		
구 분	지분율	종목별 보유액			
코스피	1% 이상	3억원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비상장	4% 이상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23년) 등 감안

6.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소득령 §159의2①2)

* CFD(contract for difference) :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범위 ①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 <추 가> ② 주식워런트증권(ELW) ③ 국외 장내 파생상품 ④ ①과 유사한 장외파생상품	☐ CFD 추가 ○ (좌 동) ○ 아래 요건을 갖춘 장외 파생상품 -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 주식등,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상장지수증권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 ○ (좌 동)

(2) 개정이유

- 파생상품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차익의 계산(소득령 § 161의2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추 가>	☐ CFD 양도차익 계산 ○ 계좌별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기타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

(2) 개정이유

- CFD 투자에 따른 실질 소득에 맞게 과세소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상장주식의 시가(소득령 § 167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2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 89① ① 원칙 :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장외거래 및 대량매매의 경우 :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②의 거래 중 경영권 이전 되는 경우 : ②의 가액에 20%가산
☐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 적용	○ (좌 동) * 단, 상장주식은 적용 제외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법인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 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
 -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
 -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
 -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
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19.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
 -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
 -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
 - ④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
20.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2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
22.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23. 가상자산 규정 정비
 -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
 -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
24.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 25-1.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 25-2.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규정

- 2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 2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 28.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 29.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
- 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
- 31.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 32.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52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1443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44호(2021.3.16.)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법인법 §5, 법인령 §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 납세의무자 ① (원칙) 수익자 ② (예외) 위탁자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추 가> ○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 신탁은 도관으로 간주	☐ 과세방식 및 납세의무자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위탁자 과세 범위 확대 - (좌 동)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위탁자의 지배주주 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좌 동)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선택 허용 ○ (대상) ❶~❷의 신탁(「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제외)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의 수탁자*가 선택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 ❶ 「신탁법」§3에 따른 목적신탁 ❷ 「신탁법」§78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❸ 「신탁법」§114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❹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권 및 수익의 유보·배분액 결정권을 갖는 경우(시행령 규정) - 수익자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 ○ (과세방식)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수탁자에게 과세 *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배분시 배당소득세 과세
--------------------	---

(2) 개정이유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소득 과세방식 다양화에 따른 원천징수 규정 보완
(법인법 §7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채권 등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수익자신탁·위탁자신탁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 (좌 동) ○ 수익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 대리·위임 간주 ○ 위탁자 과세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 등 매도시: 신탁업자와 위탁자 간 대리·위임 간주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 별도 특례규정(§75의17) 신설

(2) 개정이유

- 위탁자 과세신탁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법인법 §75의10·11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에 대한 특례 ○ (수탁자의 납세의무) 고유소득과 분리된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부담 ○ (수익자의 보충적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 등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수익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수익 분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 분배시 배당으로 간주 ○ (요건 미충족시 과세방법)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적용이 가능한 신탁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예) 신탁재산 처분권 등이 수탁자→위탁자로 이전된 경우 -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 과세 특례 미적용

(2) 개정이유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법인법 §75의12, 법인령 §120의2 및 §120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기본규정 ○ (설립)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한 것으로 간주 -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신탁이 설정된 날 ○ (해산)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간주 * 단, 종료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 ○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 별도로 사업연도 신고 ○ (납세지) 수탁자의 납세지와 동일 - 법인과세 신탁재산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납세지 지정 * 수탁자의 본점 등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불일치 등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⑤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법인법 §75의1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규정 ○ 1개의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의 신탁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주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세의무 부담 ○ 주수탁자 외 수탁자도 연대납부 책임 부과

(2) 개정이유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중과세 조정

(법인법 §18의2·3, §75의14, 법인령 §120의4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 배당 소득공제 신설 ○ (내용)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게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적용시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소득공제 신청방법 등) 배당금액이 소득금액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수익자 배당에 대한 중복조정 배제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배제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⑦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
(법인법 §75의1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규정 ○ (합병) 신탁의 합병은 합병으로 간주 - 종전의 신탁재산 → 피합병법인 새로 합병된 신탁재산 → 합병법인 ○ (분할) 신탁의 분할은 분할로 간주 - 이전하는 신탁재산 → 분할법인 이전되는 신탁재산 → 분할신설법인

(2) 개정이유

- 신탁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법인법 §75의16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 수탁자 변경에 따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경우 변경 후 수탁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법인법 §75의17·18, 법인령 §120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배제
<신 설> ※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 有(법인법 §73)	☐ 법인과세 신탁재산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제외 - (이자소득 등의 범위) 「소득세법(§16①)」에 따른 이자소득 및 집합투자신탁의 이익 - (금융회사 등의 범위) 은행·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 등 ※ 일반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 의무를 배제하는 규정(「법인세법 시행령」§111)과 범위 동일
※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 有(법인법 §73의2)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매도시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과세 수탁자에 해당

(2) 개정이유

- 납세협력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⑩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신고(법인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설립 신고 ○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재내용) -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본점 소재지 - 사업 목적 등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신고 내용 규정 ○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법인과세 신탁재산 기재내용 - 수탁자 명칭 등 추가 - 수탁자의 본점 소재지 - (좌 동)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⑪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법인법 §109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 신고 ○ (신고사유) 新수탁자가 선임,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승계, 主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사유 발생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 (제출서류) 변경 신고서, 변경사실 증명서류 ○ (기재내용) 新수탁자, 승계한 수탁자, 변경 전·후 主수탁자의 명칭, 납세지 등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에 대한 신고규정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⑫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특례(법인법 §1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사업자등록 ○ 신설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특례 ○ (좌 동)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⑬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법인법 §1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 경리 ○ 신탁재산 귀속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신 설>	☐ 구분경리 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 별로 귀속 소득을 각각 구분 경리

(2) 개정이유

- 구분경리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⑭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법 §5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 · §76의13, 소득법 §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희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 → 15년 ○ (좌 동)

(2) 개정이유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법 §1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좌 동) ○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법인법 §24, 조특법 §88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범위 및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table><tr><th>구 분</th><th>손금산입 한도액</th></tr><tr><td>1. 법정기부금</td><td>(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td></tr><tr><td>2. 지정기부금</td><td>[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td></tr></table>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③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2) 개정이유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46의4, 법인령 §81·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	☐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 기부금한도초과액 × $\frac{\text{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text{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적용에 관한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⑦ 및 §80의4⑧*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2) 개정이유

-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동산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보완(법인법 §46, 법인령 §8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에 위한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 다음의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음(법인령) * ①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 <신 설>	☐ (적격분할의 요건) 사업목적에 위한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삭 제>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는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 ①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②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중 토지·부동산 등이 80% 이상인 사업부문

(2)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에 관한 규정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7.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 동)

(2) 개정이유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2, 법인령 §155의2, 소득법 § 81의7, §16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정의 (법인법 §75의4, 소득법 §81의7) ○ 법인세 : 손금산입을 위해 필요한 영수증 ○ 소득세 :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영수증 <추 가>	☐ 정의 추가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영수증 포함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영수증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 의무(법인법 §112의2, 소득법 §160의3) ○ (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일로부터 5년간 ○ (제출) 국세청장 등이 요청시 제출할 의무 <단서 추가>	☐ 단서 추가 ○ (좌 동) ○ (좌 동)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 의무 면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단서 추가>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 - 제출의무 면제

(2) 개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법인법 §75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대상)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 가산세율 50% 인하 ○ (좌 동) ○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2) 개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76의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2) 개정이유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1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령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수익사업 범위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추 가>	☐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 (좌 동) - 건강가정지원센터 ○ (좌 동) ○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대출사업* * ❶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❷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1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법인칙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 (좌 동) ○ 대상 법인 추가 -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무·구조조정업무를 행하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 (좌 동)

(2) 개정이유

- 실질적 구조조정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 소득령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41, 소득령 §8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의 손비 인정
(법인령 §19, 소득령 §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비의 범위 ○ 매입가액, 양도자산 장부가액, 감가상각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추 가>	☐ 손비 범위 확대 ○ (좌 동) ○ 해당 내국법인 또는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출연금

(2) 개정이유

- 기업의 근로자 복지사업 원활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6.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 (법인령 §19의2, 법인칙 §10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추 가 >	☐ 대손 사유 추가 ○ (좌 동)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 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① 채무자의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공공기관 등이 확인 ※ 「舊외국환거래규정」에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일

(2) 개정이유

- 해외채권의 대손처리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17.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개발비 요건 보완 ○ (좌 동) ○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2) 개정이유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8.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법인령 §3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 폐기에 따른 즉시상각 의제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추 가>	☐ 의제대상 추가 ○ (좌 동)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법인의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

19. 법인세법상 지정 대상 공익법인 규정 보완

①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⑧, 법인령 §39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 <단서 추가>	○ 공개기한 : 3개월 → 4개월 이내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⑥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①,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의 요건 또는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부여 금지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 특정 다수일 것 <단서 추가>	☐ 단서 규정 신설 ○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시 예외 인정 * 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상증령§38)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의 지정 취소사유 보완(법인령§38⑪, §39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 상증법상 의무 위반 - ❶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인 의무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4개 의무 (상증법§48②,③,⑧~⑪) - ❷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위반 시 취소 대상인 의무 :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 · 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 (상증법§50③,50의2,50의3) ○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지정요건 및 의무 위반 등	☐ 취소사유 보완 ○ (좌 동) - ❶, ❷ 의무* 위반으로 상증세(가산세포함) 1천만원 이상 추징시 취소 대상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등 17개 의무 ○ (좌 동)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공익법인 추천 기한 규정(법인칙 §1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절차 ○ (비영리법인→국세청) - 추천을 원하는 공익법인은 추천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 ○ (국세청→기획재정부)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제출 * 추천단체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	☐ 추천신청 및 추천 기한 설정 ○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좌 동)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2) 개정이유

-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의 지정 절차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 ○ (좌 동) ○ 건강가정지원센터

(2)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기부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1.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추가(법인령 §6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 은행, 증권·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추 가>	☐ 금융회사 대상 추가 ○ (좌 동)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2) 개정이유

-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 (법인령 §7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단서 적용 배제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3. 가상자산 규정 정비

①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73, §77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등 <추 가> <신 설>	☐ 평가대상 자산·부채 추가 ☐ ○ (좌 동) ○ 가상자산 ☐ 가상자산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소득세법」과 동일

(2) 개정이유

- 가상자산 평가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	□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방법 규정 ① (좌 동) ② 제외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 (제외대상) 가상자산 추가 ③ (좌 동) * 상증령에서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2) 개정이유

- 가상자산 시가 산정방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4.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법인령 §8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등만으로 구성된 사업 부분 분할시 예외적으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로 보는 경우 ❶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분 등 ❷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분 <신 설>	☐ 적격분할의 적용범위 보완 ○ (좌 동) -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분을 포함 * ❶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❷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2) 개정이유

- 분할과 분할합병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5-1. 물적분할·현물출자의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 (법인령 §84·8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 (원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용에 따라 익금산입 * ①분할법인·출자법인이 주식 등을 처분, ②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예외)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출자법인·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구조조정*하는 경우 과세이연 유지 *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추 가>	☐ 사후관리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예외) (좌 동) - 다음의 경우 “최초로” 제한없이 과세이연 유지 ▪ 완전 모자관계가 유지되는 적격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 ▪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물적분할

(2) 개정이유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5-2. 물적분할·현물출자 주식보유비율 계산방식 규정 (법인칙 §4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의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규정 ○ 계산방법 $\begin{aligned} & \text{주주법인*에 대한 당초 분할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 \times \\ & \text{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 & \text{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 & \text{피출자법인에 대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 \end{aligned}$ *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주주인 법인 -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 당초 분할법인·출자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다른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2) 개정이유

- 간접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합병·분할·물적분할·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6.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④ 및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방법(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아래의 방법에 따른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일정수량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 예) 장중/시간외 경쟁대량매매·대량 매매·바스켓매매 - 아래에 따른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② (좌 동) ③ (좌 동) □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

(2) 개정이유

-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7. 연결법인간 용역거래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기준 마련 (법인령 §88①, 법인칙 §42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행위계산 유형 ○ 금전, 자산 및 용역 등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제공하거나, 고리로 차용·제공받는 경우	□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제외 ○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내부 용역 제공 거래는 제외 ①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그 밖에 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② 해당 용역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일 것

(2) 개정이유

- 연결법인 부당행위계산 적용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8.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법인령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 기타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 용역제공원가 × (1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 에서의 수익률)	☐ 시가 산정방법 명확화 ☐ 용역제공원가 × (1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거래 또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서의 수익률)

(2) 개정이유

- 용역제공에 대한 시가 산정방법 보완

29.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대상 축소(법인령§158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 ○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 작성·보관대상 기준금액 상향 ○ 20억 원 → 30억 원 이상

(2) 개정이유

-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추가(법인령§161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 농협 등 조합법인, 투자회사 ○ 공공기관·기관투자자 및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등 <추 가>	☐ 제출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정비사업조합

(2) 개정이유

- 정비사업조합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법인령 §1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비대칭리스 거래에 대한 계산서 공급가액 작성기준 명시 ○ 비대칭리스*의 경우 계산서 공급 가액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운용리스)에 따른 금액 *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특수 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잔가보장약정을 받는 경우

(2) 개정이유

- 비대칭리스의 계산서 공급가액 기준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

32.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인칙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연 1.8%	☐ 이자율 조정 ☐ 연 1.2%

(2) 개정이유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정된 주요내용】

I. 양도소득세 분야

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
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②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③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
 - ④ 상속·혼인·동거분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
 -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임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
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
16.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17.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1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9.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
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2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보유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23.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24.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II. 법인 양도 분야

1.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2.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
3.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4.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5.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소득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477호(2020.8.18.), 제17757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083호(2020.10.7.), 제31442호(2021.2.17.),
제31659호(2021.5.4.)
- 기획재정부령: 제848호(2021.3.16.)

【법인세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률: 제17476호(2020.8.18)
- 대통령령: 제30920호(2020.8.7.), 제31084호(2020.10.7.),
제31443호(2021.2.17.), 제31660호(2021.5.4.)

I. 양도소득세 분야

1.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소득법 §8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원칙) 신탁 설정 시 양도로 보지 않고, 신탁재산 양도 시 위탁자를 양도자로 보아 과세 ○ (예외) 위탁자의 지배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 신탁 설정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 신탁계약 해지권·수익자변경권·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 신탁재산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

(2) 개정이유

- 신탁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명확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 §104 등)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단, ¹⁾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 ²⁾ 「자본시장법」(§110, §189) 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 (세율) 과표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 ○ (기준시가) 「상증법」상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규정 준용(상증법 §65) ○ (세원관리) ‘수익자명부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2) 개정이유

-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수익권(수익증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신탁 수익권 범위 명확화 (소득령 §15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수익권(수익증권) ○ 자본시장법 제189조의 투자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수익권 ○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탁 수익권의 범위 명확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소득법 §115의2, 소득령 §17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탁의 수탁자는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수익자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31일까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신고기간까지)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내용 *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수익자별 수익권(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2) 개정이유

-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내용 구체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의 범위(소득법 §88, 소득령 §152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분양권의 정의 신설 * (기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개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분양권의 범위(근거 법률) 명확화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법률과 동일

(2) 개정이유

- 분양권의 범위 명확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❶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u>10%p</u>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u>20%p</u> ❷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❶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u>20%p</u>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u>30%p</u> ❷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 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2) 개정이유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소득령 §15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신규주택 완성전 또는 완성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③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할 것 ㉡ 주택이 완성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 양도	☐ 1주택자의 분양권 취득 ○ ①,②의 경우에 한해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 ③은 입주권만 해당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원칙)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 (예외) 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적용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③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소득칙 §75의2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원칙)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 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 (예외) 다음의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 ①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② 근무상 형편(직장 변경, 전근등) ③ 1년 이상의 질병 치료·요양 ④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예외사유 적용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④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소득령 §167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으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① 일반주택+ 상속(입주권) ② 「일반주택+입주권」 + 상속(주택 또는 입주권) → 일반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 ②의 일반주택은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특례 ○ (대상) 다음중 하나를 소유한 자간 혼인 또는 세대 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 - ㉠ 1주택, ㉡ 1입주권, ㉢ 1주택 1입주권 → 혼인일부터 5년 또는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의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혼인 전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경우에 한정 □ 문화재주택 또는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입주권」 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 일시적 「1주택+1입주권」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정	□ 상속·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인한 분양권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 적용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8.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2주택자 중과 제외(§167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1주택 1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주택 ○ 취학·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 해당 주택 ○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주택 1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 분양권 보유하는 경우 추가 ○ 1주택 1분양권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좌 동)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 이상자에 대한 중과 예외(소득령 §16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예외 ○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상기 주택 외 1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 (주택수 차감하여 계산) - 혼인으로 주택·입주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5년 내 해당 주택 양도시 배우자의 주택·입주권의 수를 차감하여 주택 수를 계산	□ 분양권을 보유하는 경우 추가 ○ (좌 동) - 혼인으로 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2) 개정이유

-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9.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소득령 §155, §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❶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18.3.31까지 등록분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건설임대주택 등 ❷ 임대주택외 거주주택 비과세 ○ 단기임대주택(5년이상 임대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 등)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건설임대주택 등	①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②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② 10년으로 연장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변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8.18.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10.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 규정 신설(소득령 §15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비과세 요건) 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거주주택 1채 ②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중이며, 법령상 요건 충족한 경우 - 단기임대주택 :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사후 관리)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한 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정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의 예외규정 신설 ○ (좌 동) - 임대등록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시 : 임대등록말소** 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 2호 이상 임대시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경우를 말함 ○ 임대주택 자진*. 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하더라도 旣양도자에 대해 미추징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비과세요건) '20.8.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징예외) '20.8.18.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11.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요건) 5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8.9.13까지 취득분 - (요건) 8년이상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등	☐ 중과세율 적용배제의 예외규정 신설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20.8.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소득령 §154①, §15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대상) 1세대 1주택 - 비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 조정지역: 보유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	○ 1세대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른 자의 거주기간으로 판단 -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 당해주택 거주자 → ③ 최연장자 ※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순서와 동일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상)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 거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 (공제율) 24~80%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거주요건 판단기준 명확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소득령 §154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 계산) - (원칙) 취득일 ~ 양도일 - (예외)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거주기간 계산) -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	○ (좌 동) - 증여, 용도변경*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 추가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 ○ (좌 동)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합리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증여·용도변경 하는 분부터 적용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소득령 §155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 ㉢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 3년 기한의 예외 -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 - 법원에 경매 신청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진행 중 -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시행으로 청산금 지급소송 또는 매도청구 소송 진행 중 < 추 가 >	☐ 3년 기한의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예외 사유 추가 - (좌 동) -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용재결 진행중

(2) 개정이유

-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과 수용재결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적용기한
특례사유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보완(소득칙 §72③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 경매 신청사실 입증 서류 ☐ 현금청산금지급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도청구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 가 >	☐ 제출 서류 추가 ☐ (좌 동) ☐ 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 추가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

(3) 적용시기

- '21.3.1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6.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범위 명확화 (소득령 §15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적용대상)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보유자의 2년 이상 거주한 주택(평생 1회) ○ (적용제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중 아래의 주택은 제외 ① '18.9.14 이후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 ② '20.7.11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아파트 ③ '20.7.11 이후 단기→장기임대 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비과세 혜택 대상 거주주택 범위 명확화 ① <삭 제> *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 예규 해석에 맞춰 시행령 명확화

(2) 개정이유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 명확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 마련
(소득령 §155④ 및 §167의3⑦⑧, 소득칙 §10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등록임대주택·가정어린이집 외의 거주주택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신청시 구비서류 ○ (납세자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 인가증 - 임대차계약서 등록사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추 가>	□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추가 ○ (좌 동) - < 삭 제 > (좌 동) -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어린이집인가증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소득법 §9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상) 1세대 1주택자 ○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 요건 추가 ○ (좌 동) ○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24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32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40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48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56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64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7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 이상	80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2) 개정이유

-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9.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소득법 §10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좌 동)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보유기간 불문 5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2) 개정이유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 조정대상지역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자 중과세율 적용 제외 주택 추가(소득령 §167의3, §16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 문화재주택·상속주택·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상기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 (좌 동)

< 추 가 >	○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등록임대 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추 가 >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 ·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 · 양도되는 주택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소득령 §167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취학·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해당 주택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 위 주택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 등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 (좌 동)

< 추 가 >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추 가 >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추 가 >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2.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주권 또는 주택·분양권 보유자 중과 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소득령 §167의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과 임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씩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 되는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장기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 ○ 취학·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1임주권 또는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 혼인 합가, 부모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1주택· 1임주권 또는 1주택· 1분양권을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 ○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 중과 제외 주택 추가 ○ (좌 동)

< 추 가 >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공익사업용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77조) -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수용·양도되는 주택
--	---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말·체험영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소득령 §168의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말·체험영농 농지 ○ 사업용 토지로 인정	☐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2) 개정이유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3) 적용시기

-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4.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소득령 §168의1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 (좌 동) ○ 2년 → 5년

(2) 개정이유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3) 적용시기

- '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II. 법인 양도 분야

1.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대상 조정 (법인법 §55의2, 법인령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적용대상 ○ (대상)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 ○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u>10%</u> ○ (예외) 일부 주택은 추가세율 적용 제외 ① '18.12.31. 이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 ② '08.12.31. 이전 등록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임대주택 ③ '09.6.30까지 계약 체결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④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신탁업자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 '14.12.31. 등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정 ⑤ 8년 장기 임대주택 < 단서 신설 > ⑥ 임직원용 사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등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조정 ○ (대상) <u>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u> ○ (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u>20%</u> ○ (좌 동) - 법인이 '20.6.17. 이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한정 *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개인·법인간 세 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 (세율인상)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주택 추가세율 적용) '20.8.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제혜택 적용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조정 및 신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연장(법인령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①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준수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준수 ○ 건설임대주택 등 ② 장기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8년 ○ (매입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 (건설임대)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① 세제혜택 적용대상 범위 조정 ○ 단기임대주택 삭제,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제외 ② 10년으로 연장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변경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8.18.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규정 신설(법인령 §9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 제외 ○ 단기임대주택 * '18.3.31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5년 등 ○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 * '20.6.17까지 등록분 - 의무임대기간 8년 등	☐ 추가세율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 신설 ① 임대등록 자동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⑤) : 법인세법상 임대기간 충족한 것으로 봄 ②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민간임대주택법§6①11) : 말소 후 1년내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배제 *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20.8.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 (3) 적용시기

- 192 -

5.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요건 강화 (법인령 §92의11③)

종 전	개 정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요건 강화 ○ (좌 동) ○ 2년 → 5년

(2) 개정이유

-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 방지

(3) 적용시기

- '21.5.4. 이후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



중 합 부 동 산 세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주요내용】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
2.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3.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법인 보유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6.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7.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8.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
9.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종합부동산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478호(2020.8.18.), 제17760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0921호(2020.8.7.), 제31085호(2020.10.7.), 제31477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6호(2021.3.16)

1.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중부법 §7, §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 ○ (예외) 신탁재산의 수탁자 <신 설>	○ (좌 동) ○ 위탁자로 납세의무자 변경 ☐ 수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 위탁자가 중부세 체납 시, 신탁재산에 한하여 수탁자에 대한 체납 허용

(2) 개정이유

-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중부법 §8, 9, 10, 중부령 §4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단일 최고세율* ○ 2주택 이하 : 3.0%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다음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 적용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3)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4)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세 공제액 계산시에도 6억원 공제 미적용

(2) 개정이유

-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법인 보유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중부령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 ① 건설임대주택 -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요건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② 매입임대주택 - 유형 · 공공지원민간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 제외 대상 · 1주택 이상 세대원이 '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추 가>	○ (좌 동) - 가액 상향 및 기간요건 강화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 폐지되는 등록 유형 반영 · (좌 동) · '20.7.11 이후 등록하는 아파트 제외 - 임대기간 요건 강화 · (좌 동) ·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및 임대료 5% 상한 준수 - 제외 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20.6.18. 이후 등록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 개정이유

- 법인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3) 적용시기

- 임대기간 연장 : '20.8.18. 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유형 폐지 :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제외대상 추가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 가액기준 상향 : '21.2.17. 이후 신규 임대등록 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 (종부령 §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세일앤리스백 리츠*가 한계·연체 주담대 차주**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신 설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 (좌 동)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 개정이유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종부법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부동산세율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 원 이하</td><td>0.5</td></tr> <tr> <td>3 ~ 6억 원 이하</td><td>0.7</td></tr> <tr> <td>6 ~ 12억 원 이하</td><td>1.0</td></tr> <tr> <td>12 ~ 50억 원 이하</td><td>1.4</td></tr> <tr> <td>50 ~ 94억 원 이하</td><td>2.0</td></tr> <tr> <td>94억 원 초과</td><td>2.7</td></tr> </table>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 원 이하</td><td>0.6</td></tr> <tr> <td>3 ~ 6억 원 이하</td><td>0.9</td></tr> <tr> <td>6 ~ 12억 원 이하</td><td>1.3</td></tr> <tr> <td>12 ~ 50억 원 이하</td><td>1.8</td></tr> <tr> <td>50 ~ 94억 원 이하</td><td>2.5</td></tr> <tr> <td>94억 원 초과</td><td>3.2</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9																												
6 ~ 12억 원 이하	1.3																												
12 ~ 50억 원 이하	1.8																												
50 ~ 94억 원 이하	2.5																												
94억 원 초과	3.2																												
○ 0.1 ~ 0.3%p 상향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 원 이하</td><td>0.6</td></tr> <tr> <td>3 ~ 6억 원 이하</td><td>0.8</td></tr> <tr> <td>6 ~ 12억 원 이하</td><td>1.2</td></tr> <tr> <td>12 ~ 50억 원 이하</td><td>1.6</td></tr> <tr> <td>50 ~ 94억 원 이하</td><td>2.2</td></tr> <tr> <td>94억 원 초과</td><td>3.0</td></tr> </table> ○ 0.6 ~ 2.8%p 상향 <table>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r> <td>3억 원 이하</td><td>1.2</td></tr> <tr> <td>3 ~ 6억 원 이하</td><td>1.6</td></tr> <tr> <td>6 ~ 12억 원 이하</td><td>2.2</td></tr> <tr> <td>12 ~ 50억 원 이하</td><td>3.6</td></tr> <tr> <td>50 ~ 94억 원 이하</td><td>5.0</td></tr> <tr> <td>94억 원 초과</td><td>6.0</td></tr> </table>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1.2																												
3 ~ 6억 원 이하	1.6																												
6 ~ 12억 원 이하	2.2																												
12 ~ 50억 원 이하	3.6																												
50 ~ 94억 원 이하	5.0																												
94억 원 초과	6.0																												

(2) 개정이유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중부법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60 ~ 65세 미만</td><td>10</td></tr> <tr> <td>65 ~ 70세 미만</td><td>20</td></tr> <tr> <td>만 70세 이상</td><td>30</td></tr> </tbody> </table> - 장기보유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5 ~ 10년 미만</td><td>20</td></tr> <tr> <td>10 ~ 15년 미만</td><td>40</td></tr> <tr> <td>15년 이상</td><td>50</td></tr> </tbody> </table>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구간별 공제율 +10%p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60 ~ 65세 미만</td><td>20</td></tr> <tr> <td>65 ~ 70세 미만</td><td>30</td></tr> <tr> <td>만 70세 이상</td><td>40</td></tr> </tbody> </table> (좌 동)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10																								
65 ~ 70세 미만	20																								
만 70세 이상	30																								
보유기간	공제율(%)																								
5 ~ 10년 미만	20																								
10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	공제율(%)																								
60 ~ 65세 미만	20																								
65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 한도 +10%p 인상 최대 80%																								

(2)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중부세 부담 합리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종부법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 상한비율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세부담 상한(%)</th></tr> </thead> <tbody> <tr> <td>2주택 이하</td><td>150</td></tr> <tr> <td>조정대상지역 2주택</td><td>200</td></tr> <tr> <td>3주택 이상</td><td>300</td></tr> </tbody> </table>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좌 동)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상한비율 변경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세부담 상한(%)</th></tr> </thead> <tbody> <tr> <td>2주택 이하</td><td>150</td></tr> <tr> <td>조정대상지역 2주택</td><td>300</td></tr> <tr> <td>3주택 이상</td><td>300</td></tr> </tbody> </table>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세부담 상한(%)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2) 개정이유

-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강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 (중부법 §10의2, 중부령 §5의2, 중부칙 §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신고 허용 ❶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❷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❸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 * 특례신청 다음연도부터 주택의 소유자 또는 지분율, 공동명의 1주택자 변경 발생 시 변경신청 필요

(2) 개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9.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중부령 §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추 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

(3) 적용시기

- '20.8.18.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 하는 분부터 적용

상 속 세 밋
증 여 세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신탁세제 개편

- ①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
- ②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
- ③-1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③-2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③-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③-2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 ④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의무 대상 명확화
- ⑤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 ⑥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 ⑦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 ⑧ 연구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가산세 완화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

6.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

7.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

8.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
9.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
10.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제출 의무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54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446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2호(2021.3.16.)

① 위탁자·수익자 사망과 연계한 신탁의 과세 명확화(상증법 §2, §9)

종 전	개 정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 - 타인이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수익권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수익권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既납부 증여세 공제) ○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수익권을 소유: 수익권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추 가>	☐ (좌 동) ☐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유언대용신탁*) 유증·사인증여와 유사한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 *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수익자연속신탁*) 직전 수익권자 사망 시 승계수익권자의 수익권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새로운 형태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 명확화

○ '2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시기 보완(상증령 §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 시기 ○ (원칙)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 (예외) ① 수익을 받기 전 위탁자 사망시 : 사망일 ② 확정된 원본·수익을 분할지급시 : 최초 지급일 <단서 신설>	☐ 증여 시기 보완 ○ (좌 동) ○ (예외)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 ① 신탁계약 해지권 ② 수익자 지정·변경권, ③ 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의 위탁자 보유

(2) 개정이유

- 신탁과세 체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③-1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상증령 §61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Max(①, ②) 신탁재산가액+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① $\frac{\text{원천징수세액상당액}}{(1+\text{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법§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② (좌 동)

(2) 개정이유

-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③-2 상속·증여로 인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상증령 §61①, 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Max(①, ②)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① $\frac{(1+\text{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n: \text{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 Max(①, ②)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① $\frac{(1+\text{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n: \text{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추 가> ②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 평가액 - 신탁의 수익 평가액 ② (좌 동) □ 신탁의 수익 평가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① (좌 동) -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62)을 준용한 기간으로 함 ② (좌 동)

(2) 개정이유

- 신탁이익의 과세체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①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6, §48, 상증령 §4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구 분	한 도	구 분	한 도
성실공익법인	10%	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2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5%
기타 일반 공익법인	5%	* ①~⑤의 경우에는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① 공익목적사업에 운용소득의 80% 이상 미사용 ②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미사용 ③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④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 사용 ⑤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2) 개정이유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상증법 §48, 상증령 §4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비치 <추 가>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 (좌 동) ○ 요건 ⇒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2) 개정이유

-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6, §48, 상증령 §38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 일반공익법인 : 70% ○ 성실공익법인 : 80%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 공익법인 : 80%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 가산세 : 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①+② · ① 가산세 : 미달 사용액의 10% · ② 증여세 : 주식 5% 초과보유분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2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상증령 §38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 : ① - ②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신 설>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 으로 받은 부분 ② (좌 동)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④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의무 대상 명확화(상증령 §43③④, §43의2①, §43의3①②, §80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상 : 성실공익법인 등	☐ 대상 : 특정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2) 개정이유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상증법 §48②, 상증령 §3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①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②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추 가> ☐ 공익목적 사용 위반의 예외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추 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 (좌 동) ③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 ☐ 예외 명확화 및 추가 ①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예외 명확화 및 추가 관련) '21.2.17.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⑥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상증법 §48⑬, 상증령 §41의2, 상증령 §80⑱, 상증칙 §13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 (대상) 성실공익법인 ○ (기간) 매 5년 ○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신 설> <신 설>	□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 (대상) 기존 성실공익법인확인 대상*인 공익법인 * 1)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2)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3) '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 (기간) 매년 ○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② 설립허가서 및 정관 ③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④ 이사 등 선임명세서 ⑤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⑥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⑦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미신고 가산세)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기법」§49)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상증령 §43의3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공시자료 등의 제공 ○ 국세청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자료 제공 신청시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제공 가능 - 국책연구기관 -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추 가>	□ 제공 대상 확대 - (좌 동) -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한 기관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⑧ 연구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 완화(상증령 §80⑩, 상증칙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 (예외)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추 가>	□ 가산세 부과 예외에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원 추가 ○ (좌 동) - (좌 동) -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기관 ** 1)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 학위 이상 소유 2)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3) 행정 사무만을 담당하지 않을 것

(2) 개정이유

- 연구개발 관련 공익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분할기한 연장 ○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상증칙 §10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초과배당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초과배당금액에 따라 14~42% <신 설>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좌 동)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소득세 과다·과소공제 방지 ○ 초과배당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초과배당금액에 따라 14~45% - 실제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정산(환급 또는 차액 납부) * ① 초과배당금액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경우 : 0 ②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③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text{Max}(\text{종합소득세액} - \text{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text{초과배당금액} \times 14\%)$

(2) 개정이유

-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상증령 §35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추 가>	○ (좌 동) ○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좌 동)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으로 한정

(2) 개정이유

-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상자산 평가방법 신설(상증법 §60·65, §상증령 60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 ○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 (예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대상 자산 · 부동산등(상증법 §61)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62) · 유가증권등(§63) · 무채재산권(§64) · 조건부 권리 등(§65) <추 가> <신 설>	☐ (좌 동)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대상 추가 [(좌 동) ·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가상자산 평가방법 ①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이후 1개월간 공표된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종료시각에 공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2) 개정이유

-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방법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령 §5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은 주식평가액에 20% 할증 ☐ 할증평가 제외 사유 ① 결손법인(직전 3개연도) ② 평가기간 내 주식 전부 매각 (매각가액 시가 인정시) ③ 증자·감자등에 따른 이익 ④ 사업개시 3년 미만으로 영업이익 결손 법인 ⑤ 청산 확정된 경우 ⑥ 최대주주 등 외의 자 상속· 증여분 ⑦ 명의신탁 증여의제 ⑧ 중소기업 주식 ⑨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출자·보유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1차 출자·보유분만 할증평가)	☐ (좌 동) ☐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 ⑧ (좌 동) ⑨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출자·보유 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1차 출자·보유분도 할증평가 제외)

(2) 개정이유

-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주식등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8.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자산 합리화(상증령 §68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안
☐ 연부연납 특례(최대 20년) 적용 대상 ○ (대상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 (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 외 모든 업종 ○ (연부연납 대상자산가액) - (개인사업자) 사업용 자산가액* 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의 주식등 가액에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부동산, 업무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 연부연납 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 (좌 동) - 사업용자산가액 산정시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좌 동)

(2) 개정이유

-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을 경정청구 대상에 추가(상증령 §81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 경정청구 허용 사유 ○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수용·경매·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 할증평가한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내에 일괄하여 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가>	□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추가 ○ (좌 동) ○ 상속받은 의무보호예수주식을 의무보호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결정·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는 예탁자 <추 가>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 (좌 동) ○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2) 개정이유

-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된 주요내용】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조정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③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5.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6.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1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III.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 ②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 ③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④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 1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 1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14.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
- 1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
-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정비
- 1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 1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
- 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2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1.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 22.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 23.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 24.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
- 25.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26.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IV.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27.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 28.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
- 29.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31.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3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V. 공익사업지원 및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3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35.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
- 36.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
- 3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38.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3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40.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개편
- 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 ① 비과세 요건 개선
 - ② 적용기한 폐지
 - ③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원천징수 기준일 조정
 - ⑤ 계약기간 만료 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
- 42.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43.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 시점 보완

4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VI.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45.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4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

④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

47.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48.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4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민간
임대특별법 개정 반영 및 일몰 단축 등

5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5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

5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5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5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

55.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56. 근로·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
- ③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 5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 가구 편의 제고
 - 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 58.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①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
 - ②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관련 조문 정비
 - ③ 근로·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
 - ④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
- 5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VII.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60.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 61.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6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6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 6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 6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
- 66.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67.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VIII. 간접국세

68.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6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7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7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2.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3.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4.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75.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7.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79.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8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8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8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8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등
8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8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86.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
87.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신설

88.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IX. 기타

89.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과세특례 합리화

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시장조성 상품 재설계

②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90. 입국장 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대상 등 명확화

91. 입국장 인도장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92.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9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94.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9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96.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97.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9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9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10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101.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통합·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759호(2020.2.29.), 제17926호(2021.3.16.)

○ 대통령령: 제30723호(2020.6.2.), 제31086호(2020.10.7.),
제31295호(2020.12.29.), 제31444호(2021.2.17.),
제31661호(2021.5.4.)

○ 기획재정부령: 제795호(2020.6.15.), 제831호(2021.3.16.),
제854호(2021.5.13.)

I.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5~30% 세액감면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구 분	업 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타	•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적용기한) '20.12.31.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22.12.31.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19.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도 적용
- (전기차 임대업) '21.1.1.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범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실질적 독립성* 확보 * ①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출자자 아닐 것, ②관계기업인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적합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 호텔업·여관업, 주점업 등 <추 가>	☐ 중소기업 범위 조정 ○ (좌 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아닌 경우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제외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그 밖의 경우 : '20.1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금액) 중소·중견기업의 상생결제 금액 x 공제율* * (지급기한 15일 이내) 0.2% (지급기한 15 ~ 60일) 0.1% ○ (요건) 전년 대비 ①현금성 결제금액 비중이 감소하지 않고, ②약속어음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

II.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①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 (조특령 별표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 추 가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 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6, 조특칙§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좌 동) ○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지원비 -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한 후, 현장실습 중 지급한 비용 *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에 따른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 과정 설치 ②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③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 포함

(2) 개정이유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취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추 가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35개 기술로 확대 - 디지털·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 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2) 개정이유

- 혁신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조특법 §13의4 및 조특령 §12의4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부품·장비 기업 ** (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❶~❷ 방식*으로 취득 ❶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❷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❸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❹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양도차익 계산방법) 조특령 §12①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름 * 총 양도차익 × $\frac{\text{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text{양도주식 등의 총수}}$ ○ (배당소득 계산방법) 조특령 §12③의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름 * 배당소득 × $\frac{\text{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수}}{\text{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 등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2.12.31.
☐ 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 ○ (특례)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벤처투자 지원

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투자대상)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 기업 * TCB 기술등급 T4 이상 ⑤ 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9.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벤처기업 등에 산업재산권*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소득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지원내용)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선택 허용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이 없는 제도 정비

10.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조특령 §1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계약금액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 ❶ & ❷의 요건을 갖춘 자 ❶ (인력요건) 연구원 ❷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 등 ○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2.12.31.	☐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 (좌 동) - ❶ & ❷의 요건을 갖춘 자 ❶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 과학 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❷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좌 동)

(2) 개정이유

-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Ⅲ.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조특령 §21 신설)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조특법 §24, 조특령 §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중소기업</th><th colspan="3">중견기업</th></tr><tr><th>위기 지역</th><th>신규 상장</th><th>일반</th><th>위기 지역</th><th>신규 상장</th><th>일반</th></tr><tr><td>공제율</td><td>10%</td><td>4%</td><td>3%</td><td>5%</td><td>4%</td><td>2% (수도권1%)</td></tr></table> ○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table><tr><th>구 분</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tr><td>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td><td>7%</td><td>3%</td><td>1%</td></tr><tr><td>② 에너지절약시설</td><td>7%</td><td>3%</td><td>1%</td></tr><tr><td>③ 환경보전시설</td><td>10%</td><td>5%</td><td>3%</td></tr><tr><td>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td><td>10%</td><td>5%</td><td>3%</td></tr><tr><td>⑤ 안전시설</td><td>10%</td><td>5%</td><td>1%</td></tr><tr><td>⑥ 생산성향상시설</td><td>7% (10%)</td><td>3% (5%)</td><td>1% (2%)</td></tr></table>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table><tr><th>구 분</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tr><td>공제율</td><td>6%</td><td>3%</td><td>1%</td></tr></table>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5) <table><tr><th>구 분</th><th>중소기업</th><th>중견기업</th><th>대기업</th></tr><tr><td>공제율</td><td>10%</td><td>7%</td><td>5%</td></tr></table>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공급업 제외)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 소 12%, 중견 5%, 대 3%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③ 환경보전시설	10%	5%	3%																																																																				
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⑤ 안전시설	10%	5%	1%																																																																				
⑥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6%	3%	1%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	10%	7%	5%																																																																				

㉠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25의7)

구 분	모든 기업
공제율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 1/5)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2) 개정이유

-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특례규정

-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②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조특칙 §12)

종 전	개 정
< 신 설 >	☐ 건축물, 차량·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❶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연구·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❷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 :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소매업, 물류산업 :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지원용 제외

(2) 개정이유

-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21)

종 전	개 정
< 신 설 >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 시설) 대1%/중견3%/중소10% + 증가분 3%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대3%/중견5%/중소12% + 증가분 3%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전원설비

(2) 개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조특령 §21)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❶, ❷) - (❸+❹)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❶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❷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❸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❹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❶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2) 개정이유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조특령 §124③, 조특칙 §54)

종 전	개 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투자**는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 제외 **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수량이 증가하는 투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는 세제지원 가능 -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투자 - 연구·인력개발시설,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설정 - (좌 동) -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던 방송·통신장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디지털 방송장비 및 전기통신설비 ** 연구시험·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등 종전 세액공제 적용대상 특정시설

(2) 개정이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조특령 §137③)

종 전	개 정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 (원칙) 투자완료일부터 2년 ○ (예외)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3년 - 건물과 구축물: 5년 · 종업원용 기숙사 및 무주택 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등 ☐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상당액 = ①의 기간 × ②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①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까지의 기간 ② 1일 0.025%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정 대상 조정 ○ (좌 동) - (삭 제) (좌 동)

(2) 개정이유

-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 자산처분 시 사후관리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 (구 조특법 §25의5, 조특령 §22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 (공제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2% 이상 ② 직전연도 R&D 비용 중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 (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 ③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 ○ 공제요건 폐지 (삭 제)

(2) 개정이유

-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 141개 시설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시설 확대 ○ 158개 시설로 확대 - 반도체·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 추가

(2) 개정이유

-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26의2, 조특령 §2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 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 ○ (집합투자기구 유형) ¹⁾부동산투자회사, ²⁾투융자집합투자기구, ³⁾부동산집합투자기구, ⁴⁾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투자대상) ❶의 자산 중 ❷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❸에 따라 심의·인정된 자산 ❶ 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①에 따른 주식·지분·채권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 ❷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에 따른 녹색산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❸ 뉴딜인프라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관련성 여부를 심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 ○ (투자대상 의무투자비율) 50% 이상* * 설정일부터 매 1년마다 일별 투자비율을 평균하여 계산 ○ 전용계좌 요건

	- 1명당 1개의 계좌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가입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 (적용기한) '22.12.31.
--	--

(2) 개정이유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모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지원내용) 배당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전용계좌 요건 ① 1명당 1개의 계좌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가입 ② 계약기간 1년 이상* *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만 신규 투자* * 전용계좌 가입 전 투자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령 §27의6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5억원을 공제한 가액에 대해 10% 세율 적용 (30억원 초과 시 20%, 100억원 한도) ○ (적용 요건) -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 이사에 취임* * 위반 시 증여세 추징 ○ (사후 관리) 다음 사항 위반시 증여세 추징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 이사직 유지, 지분유지, 기업 계속 경영	☐ 중복조문 정비 ○ (좌 동) ○ 중복 조문 정비 < 삭 제 > - (좌 동)

(2) 개정이유

- 중복조문 정비

17.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① 중소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적용기한) '20.6.30.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좌 동) ○ (적용기간) '21.1.1.~'21.12.31

(2) 개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18. 가속상각 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2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속상각 특례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고정자산 ○ (대기업) 아래의 혁신성장 투자자산 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② 조특령 §22에 따른 시설 (R&D 투자시설) ③ 조특령 §22의2에 따른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④ 조특법 §25①6호에 따른 시설 (생산성향상시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투자대상 자산 통합으로 인한 조문 정비 ○ (좌 동) ○ 대상자산 직접 기술 ① (좌 동) ② R&D 투자시설 ③ 에너지절약시설 ④ 생산성향상시설

(2) 개정이유

-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에 따라 대상자산 별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군 복무 후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중견기업 ☐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중견 20%)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 미미

20.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요건) ❶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❷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❸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세액공제액)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21.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29의3②, 조특령 §26의3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 (공제요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 ○ (세액공제액)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 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20.12.31	☐ 세액공제 확대 등 ○ (좌 동)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 '22.12.31.

(2) 개정이유

-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율 상향) '21.1.1. 이후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21.1.1.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터 적용

22.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증대세제 ○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대 5%)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고령자 고용 지원**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30의2①, 조특령 §27의2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요건) '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 ○ (사후관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1.~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좌 동) ○ 추징금액 완화 - 「세액공제액 + 이자상당액」 → 세액공제액 ○ '21.12.31.

(2)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26.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 ~ 120%인 근로자 ○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 × 사회보험료 × 50%(2년간)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정책목적 달성

IV. 기업구조조정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27.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①현물출자하거나, ②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현물출자·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8.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수도권 밖) 하는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폐업 후 전환사업*으로 창업 또는 신규사업 비중이 5년 이내 50% 이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 ○ (감면율)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 ○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실효성 미미

29.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수도권內,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 사후관리 및 추징세액 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 (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감면대상 정비 - (§63)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좌 동) ○ 추징세액 규정 일치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 (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31.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축산업 농가 지원

32.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33.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사후관리 - 5년 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V. 공익사업지원 및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4.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 원 이하 : 9% -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 12% ○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 무관경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35.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 확대(조특령 §73)

종 전	개 정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양도소득세 40% 감면 ○ 추정액 ❶ 감면세액을 전액 추정하는 경우 - 「토지보상법」상 전매금지 위반 - 이전등기 후 3년 내 대토 양도 ❷ 감면세액의 차액을 추정하는 경우 - 현금보상 전환, 증여·상속 등에 해당할 경우 대토보상과 현금보상간 차액* 추정 * 양도소득세 감면율 30% =대토보상(40%) - 현금보상(10%)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시 대토보상과 만기특약 없는 채권보상간 차액* 추정 * 양도소득세 감면율 25% =대토보상(40%) - 만기특약 없는 채권보상(15%)	☐ 리츠에 현물출자시 추정액 축소 ○ (좌 동) -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 시 대토보상과 3년만기특약 있는 채권보상간 차액* 추정 * 양도소득세 감면율 10% =대토보상(40%) - 3년만기특약 있는 채권보상(30%)

(2) 개정이유

- 공익사업 추진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 관리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4.13. 이후 현물 출자분부터 적용

36. 기부장려금단체 제도 정비(조특령 §7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요건 ①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할 것 ③ 기부금 모금·활용실적을 매년 3.31일까지 공개할 것 ④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⑤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할 것 ⑥ 결산서류를 공시할 것	☐ 지정요건 정비 ○ (좌 동) ③ 3.31일 → 4.30일 - 상증법상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 간주 ○ (좌 동)
☐ 기부장려금단체 취소요건 ①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상증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운용소득 70% 이상 공익목적 사용, 출연자 등 이사 1/5 초과 금지 등 14개 ③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④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취소요건 정비 ① 지정요건 중 ④~⑥ 제외 ② 추징사유 추가 * 현행 14개 사유 外 회계감사 의무(상증법 §50③),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50의2), 결산서류 등 공시 의무(§50의3) 추가 ○ (좌 동)

(2) 개정이유

-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취소요건: '21.1.1. 이후 지정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37.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특례 ○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 양도소득세 공제율 ❶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❷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1) 개정내용

(2) 개정이유

- 292 –

3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40.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9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 자기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신 설>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개편 ○ 증권거래세 과세 제외* * 환매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합리화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 조정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개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문 정비) '23.1.1.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
- (비적격집합투자기구)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

① 비과세 요건 개선(조특법§91의18①~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입 대상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농·어민 ※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 대상 확대 ○ 가입 시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근로소득 있는 경우 가입 가능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계약기간 ○ 5년 이상	☐ 계약기간 요건 완화 ○ 3년 이상 - 계약기간 연장 및 재가입 허용
☐ 납입한도 ○ 연 2천만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 공제	☐ 납입한도 이월 허용 ○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 = 2천만원 × [1 + 계약기간 경과연수(최대 4년)] * (좌 동)

(2) 개정이유

-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단, 납입한도 규정은 '21.1.1.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②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91의1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 (적용기한) '21.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폐지 <삭 제>

(2) 개정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적 금융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구적인 조세특례제도로 운영

③ 운용기관·재산 확대 및 주식양도차손 공제 허용
(조특법 §91의18③, 조특령 §93의4⑤·⑨·⑩·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기관 ○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 추 가 >	☐ 운용기관 확대 ○ (좌 동) ○ 투자중개업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추 가 >	☐ 운용재산 확대 ○ (좌 동)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단,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통한 주식취득은 금지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방법 ○ 합계액 = 소득 - 손실* - 보수·수수료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등 비과세분은 손실 인정되지 않음 < 신 설 >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계산 시 주식양도차손 공제 ○ 합계액 = 소득 - 손실* - 주식양도차손 - 보수·수수료 * (좌 동) - 주식양도차손에서 대주주 보유 주식분 제외 - 보수·수수료 중 주식양도차손으로 공제받은 분 제외

(2) 개정이유

-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운용재산 확대) '21.1.1. 이후 상장주식 취득분부터 적용
- (운용기관 확대 및 주식 양도차손 공제) '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④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및 소득금액계산·원천징수기준일 조정
(조특법 §91의18③·⑥·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적용을 위한 의무 계좌 보유기간 ○ (청년·서민·농어민) 3년 ○ (기타) 5년 ※ 단, 사망·이민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계좌보유기간 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 의무 계좌보유기간 완화 ○ 3년 ※ (좌 동)
☐ 소득금액 계산 및 원천징수 기준일 ○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중 빠른 날	☐ 기준일 변경 ○ 계약해지일

(2) 개정이유

- 의무 계좌보유기간이 지난 후 해지 시 해지일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

⑤ 계약기간 만료 전 연금계좌 전환 허용(조특법§91의18⑪)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로 전환가능 시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 시 < 추 가 >	☐ 전환가능 시점 추가 ☐ (좌 동) ☐ 3년 경과 이후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해지 시

(2) 개정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저축한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년 가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가입·연장·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42.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2, §88의2①, §88의5, §8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 '20.12.31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 비과세종합저축 ③ 조합 등 예탁금 ④ 조합 등 출자금	☐ 적용기한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농어민,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축 지속 지원

43.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기산 시점 보완(조특법 §89의2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보관 ○ (제출)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 기관*은 집중기관*에 세금우대 저축자료를 제출 * (취급기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보험사 등 (집중기관) 은행연합회 ○ (보관)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신 설>	☐ 연금계좌자료 보관기간 연장 ○ (좌 동) ○ (원칙)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 (예외) 연금계좌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

(2) 개정이유

- 추후 연금 수령 시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금계좌자료
지속 보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당시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해서도 적용

4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확인서류 추가 (조특령 §8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요건* 확인 서류 *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자 ○ 소득확인증명서 ○ 단, 가입 직전 연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근로·사업소득지급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추 가>	☐ 소득요건 확인 서류 추가 (좌 동) - 원천징수영수증

(2) 개정이유

- 가입자의 소득확인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VI. 국민생활의 안정 및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45.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u>4,000만 원</u>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보완

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의무임대기간 연장 및 감면 세액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조특법 §96, 조특령 §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감면대상소득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 (85㎡·6억원 이하)의 임대소득 ○ 감면율 -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 ('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시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 의무임대기간 - 공공주택법 상 임대주택 등: 4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추징규정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의무임대기간 연장 등 ○ (좌 동) ○ 의무임대기간 연장 - (좌 동)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 추징 예외규정 신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시 추징 배제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추징예외규정)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중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제외(조특법 §96, 조특령 §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등록임대주택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 상 단기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폐지된 등록임대주택 유형 (단기민간임대주택 등) 제외 ☐ (좌 동) ☐ 「민간임대주택법」 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제외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령 §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임대료(임차보증금) 연증가율 5% 이하 ○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 수가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9개월 이상인 경우 ○ 의무임대기간 충족 - 4년 중 43개월 임대 - 8년 중 87개월 임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반영 ○ (좌 동) ○ 임대등록 자진·자동 말소시 예외기준 마련 - 임대등록 자진·자동말소 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9개월 이상 임대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적용 ○ 의무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충족 간주기준 변경 - (좌 동) - 10년 중 108개월 임대

(2)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등록말소)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의무임대기간) '20.8.18.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 정비(조특령 §9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형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 가> ○ 임대기간 계산 방법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추 가> <신 설>	□ 특례 대상 추가 및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리모델링 사업 추가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 ○ 임대기간 합산규정 신설 - (좌 동)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 *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개시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유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추가하고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7.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조특령 §96의3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 소상공인인 임차인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20.6.30.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세액공제율)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 (적용기한) '21.12.31.

(2) 개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48.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조특법 §96의3②, 조특령 §96의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적용배제 ○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세액공제 적용배제 ○ 해당 과세연도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삭 제> ☐ 이미 공제받은 세액 추징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 개정이유

-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7.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4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관련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 반영 및 일몰 단축 등(조특법 §97의3, 조특령 §97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 ❶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8년 이상 임대, 임대료 상한 5%,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❷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10년 이상 임대 70%) ❸ 대상 임대주택 유형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을 제공 요건으로 추가 공적의무 수행이 요구되는 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❹ (적용기한) '22.12.31.	○ (좌 동) ○ 임대기간에 한정(기준시가 기준) 하여 특례가 적용됨을 명시 ○ 폐지되는 임대등록 유형 제외 ❶ (좌 동) ❷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제외 ○ 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20.12.31로 일몰 단축 * 건설임대주택은 현행 일몰 유지

(2) 개정이유

-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5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97의9, 조특령 §97의9, 조특칙 §6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 감면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 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준용하여 안분계산 ○ (사후관리) 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신청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 양수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2) 개정이유

-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 요건 ❶ 660m ² (200평) 이하 ❷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❸ 기준시가 2억원 이하 (한옥 4억원) ○ (적용 기한) '20.12.31.	☐ 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❶ (삭 제) ❷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❸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면적요건)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역요건)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5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요건 * 가산금 면제, 분납 허용(최대 5년) ○ (폐업일) '19.12.31. ○ (재기기간) 20.1.1.~'22.12.31. ○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19.7.25. ○ (신청기간) 20.1.1.~'2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폐업일) '20.12.31. ○ (재기기간) 20.1.1.~'23.12.31. ○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중 폐업시: '20.7.25. ○ (신청기간) 20.1.1.~'24.12.31.

(2) 개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54.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대상 범위 조정(조특령 §99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법무·회계·세무 등 관련서비스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다만,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인 의원, 치과 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	☐ 감염병 재난지역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 조정 } (좌 동) ○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좌 동)

(2) 개정이유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5.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조특법 §100의3⑤, 조특령 §100의4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홀별이가구의 범위 ○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홀별이가구 범위 확대 (좌 동)
※ 다만, <u>자녀</u> 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 및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다만, <u>자녀 또는 직계존속</u> 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좌 동)

(2)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의 부양가구 지원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6. 근로·자녀장려금 사각지대 보완 및 고소득자 수급 방지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조특령 §100의4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 방법 ☐ $\min(\text{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 고시로 결정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적용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간주전세금 단서 규정 삭제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주택가액 중복 합산 문제 해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00의4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재산 평가방식 ☐ 근로장려금 지급연도의 전년도 6.1일 기준 잔액 <추 가>	☐ 요구불예금 등 평가 기준 변경 ☐ (좌 동) -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산정

(2) 개정이유

- 금융자산가의 부정 수급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5.1.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조특령 §100의6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 산정시 소득 기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미포함) ☐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하지 않는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추 가>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좌 동) - 부동산 임대소득

(2)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와의 관련성이 낮은 점 고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57.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급 가구 편의 제고

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100의6¹²)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원칙)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추 가>	☐ 과세관청 직권신청 허용 ○ (좌 동) ○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2) 개정이유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조특법 §100의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 12.15일 하반기 소득분 : 6.15일	☐ 지급기한 단축 ○ 20일 이내 → 15일 이내

(2)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령 §100의9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①≥②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 (좌 동) ○ (좌 동) ①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u>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u> ②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

(2) 개정이유

-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발생 가능한 환수 사례를 방지하여, 수급자 불편 최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대상 ☐ 국세 체납액 총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각각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 *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총당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연 150만 원 → 연 185만 원

(2) 개정이유

-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⑤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조특령 §100의9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 다음 순서로 단계적으로 환수 ① 환수액을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 차감 후, 미환수잔액을 5년간의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 차감 후, 미환수잔액에 대해 소득세 납부고지 <추 가>	☐ 환수 방법 추가 (좌 동) ○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수액을 즉시 납부고지

(2) 개정이유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신청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8. 기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①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규정 정비

(조특법 §100의5, §100의6, 조특령 §100의6④, §100의8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 주체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 단,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주소득자	☐ 주소득자 규정 삭제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 <삭 제>
☐ 주소득자 판단 기준 ○ 거주자·배우자 중 다음의 순서로 정한 자 ①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③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주소득자 규정 삭제 <삭 제>
☐ 주소득자 신청 의제 ○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삭 제>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 - 단, 부부의 경우에는 주소득자	☐ 환급대상자 단서 규정 삭제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근로장려금 신청·수급 편의 제고

②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관련 조문 정비(조특법 §100의6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 - 다만 확정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u>확정신고</u>를 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 한 것으로 의제	☐ 확정신고 의제 관련 조문 정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확정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u>신고</u>를 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내 확정신고 한 것으로 의제

(2) 개정이유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결정일 전에 과표를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기한 후 신고에 해당

③ 근로·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조특령 §100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장의 요청자료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	☐ 요청자료 범위 변경 ○ (좌 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

(2) 개정이유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요청자료 변경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변경(조특칙 §45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증장애인 관련 제출 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제출 자료 변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사본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방법 변경

5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①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②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년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적용기한) '20.12.31.	□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①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② (좌 동) ○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년 → 2년 ○ '22.12.31.

(2) 개정이유

-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기업소득·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Ⅶ.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60.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 추 가 > ○ 연간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연간 300만 원 - 세무법인: 연간 750만 원	☐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양도소득세 추가 - (좌 동) - 양도소득세(예정신고): 건당 2만 원 ○ (좌 동)

(2)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1.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104의8⑤·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 ○ (대상)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수시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 (공제금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2) 개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62.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종료

(2) 개정이유

- 정책목적 달성

63.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 감면대상 소득 - 국내사업장 신설 및 창업시: 신설(창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국내사업장 증설시: 증설한 부분 소득 $\times \frac{\text{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text{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최대 1) ○ (적용기한) '21.12.31.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좌 동) ○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 설정 - 국내사업장 신설 및 창업시: $\frac{\text{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times \text{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text{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최대 1) *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64.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조특령 §116의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 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 관광식당업 등 <추 가> ○ 투자금액 500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원, 의료기관 등 -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업 등	☐ 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정 ○ 마리나업 추가 등 업종조정 - 카지노업, 보세판매장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 (좌 동) - 마리나업 추가 (좌 동)

(2) 개정이유

-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65.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사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 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21.12.31.

(2) 개정이유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66.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조특법 §104의31 및 조특령 §104의28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 ○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적용기한) 없음	☐ 「조특법」으로 이관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조세특례 성격 감안

67.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 = $\sum(\text{개별선박의 순톤수} \times \text{1톤당1운항일이익} \times \text{운항일수} \times \text{사용률})$]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적용기한) '24.12.31.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Ⅷ. 간접국세

68.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05①,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 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신 설>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좌 동) - 한국철도공사 ○ (좌 동) ☐ 면세대상 명확화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2) 개정이유

- 동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 조특법 §106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7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조특법 §105의2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정세액 고지일 까지 1일 0.025% ○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좌 동)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환급 추정사유 합리화

(3) 적용시기

- '2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71.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72.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전용면적 85m ²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 ²) ○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73.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74.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 (좌 동) ○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월) ○ '22.12.31.

(2) 개정이유

-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75.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7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육아비용 경감

77.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농·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78.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2.12.31.

(2) 개정이유

-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79.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80.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8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요건)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과·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 재활용 폐자원 : 3/103 - 중고차 : 10/110 ○ (적용기한) - 재활용 폐자원 : '21.12.31. - 중고차 : '20.12.31.	□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좌 동) - 중고차 : '22.12.31.

(2) 개정이유

-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3) 적용시기

- (적용요건 정비) '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8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국민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 (좌 동) -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2) 개정이유

-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83.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등
(조특령 §106⑦, 조특칙 별표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및 그 면세사업*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시험·분석·검사·진단사업, 폐비닐처리사업 등은 제외 <추 가> <추 가>	□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및 해당 단체의 면세사업 지정 ○ (좌 동) ○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 등은 제외 ○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지자체 업무대행·위탁 사업 - 친환경양식창업지원 사업, 어항구역 준설사업 등은 제외

(2) 개정이유

-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3) 적용시기

- '21.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자동차 개소세 감면 * 개소세: 5%, 교육세: 개소세액×30% ○ (감면한도) 대당 300만원* * 교육세 포함시 390만원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85.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조특법 §1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소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도서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86.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신설(조특법 §111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감면대상) 연안화물선용 경유 ○ (감면내용) 리터당 56원 감면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연료유를 전환(중유→경유)한 선박에 대한 유류비 부담 한시적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87.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감면대상)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 (감면절차) 「개별소비세법」 상 조건부 면세절차 준용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8. 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장 방문 외국인 판매 주류 면세
(조특법 §115, 조특령 §11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에 판매하는 면세대상 주류 ○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추 가>	□ 면세대상 주류 범위 확대 ○ (좌 동) ○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및 전통주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 * 주류면허령 별표1 제4호 따른 제조장 시설기준을 갖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운영하는 제조장

(2) 개정이유

- 전통주·소규모 제조 주류의 판로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를 반출(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IX. 기타

89.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과세특례 합리화

①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시장조성 상품 재설계 (조특법 §117①2의5,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위험회피 목적) ○ (증권시장조성자)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 (적용기한) '20.12.31.	○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을 대통령령으로 지정 ○ '22.12.31.

(2) 개정이유

-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합리화)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조특령 §115③,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신 설> <신 설>	☐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제한 ○ 파생상품 중 제외대상 -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상품 (단, 개별선물상품은 기초자산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봄) ○ 주식 중 제외대상 - 유동성평가 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 총액 또는 유동성평가 기간 중 회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 ※ 유동성평가 기간 : 직전년 9월부터 이전 1년간

(2) 개정이유

-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 등으로 제한

90. 입국장 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 대상 등 명확화 (조특법 §121의1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 대상물품 : 내국물품 ○ 대상물품 구입·반입시 ○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주세 면제	☐ 면제대상 등 명확화 ○ 대상물품 : 내국물품, 외국물품 ○ 대상물품 구입시 ○ (좌 동)

(2) 개정이유

- 입국장 면세점 이용 활성화

91. 입국장 인도장 부가가치세 및 주세 면제(조특법 §121의14② 신설, 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입국장 인도장 인도를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내국물품, 외국물품)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주세 면제 ○ 사업자가 입국장 인도장 인도용으로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주세 면제

(2) 개정이유

- 입국장 인도장 활성화 및 소비증진

**92.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5⑦·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 (좌 동) ☐ '21.12.31.

(2) 개정이유

-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93.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20. 2월</th><th>3월</th><th>4~7월</th><th>'20. 8월~</th></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td>15%</td><td>30%</td><td rowspan="3">80%</td><td>15%</td></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td>30%</td><td>60%</td><td>30%</td></tr> <tr> <td>도서·공연·미술관 등*</td><td>30%</td><td>60%</td><td>30%</td></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d>80%</td><td></td><td>40%</td></tr> </tbody> </table>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th>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td>300만 원</td></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td>250만 원</td></tr> <tr> <td>1.2억 원 초과</td><td>200만 원</td></tr> </tbody> </table>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2.12.31.	구 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 기준</th><th colspan="2">한도</th></tr> <tr> <th>'20년</th><th>'21·'22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td>330만 원</td><td>300만 원</td></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td>280만 원</td><td>250만 원</td></tr> <tr> <td>1.2억 원 초과</td><td>230만 원</td><td>200만 원</td></tr> </tbody> </table>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구 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2) 개정이유

- 소비 활성화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4.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1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td>15%</td></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td>30%</td></tr> <tr> <td>④ 전통시장·대중교통</td><td>40%</td></tr> </tbody> </table>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 기준</th><th>한도</th></tr> </thead> <tbody> <tr> <td>7천만 원 이하</td><td>300만 원</td></tr> <tr> <td>7천만 원~1.2억 원</td><td>250만 원</td></tr> <tr> <td>1.2억 원 초과</td><td>200만 원</td></tr> </tbody> </table>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 (적용기한) '22.12.3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 (좌 동)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 개정이유

- 소비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5.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조특칙 §52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① 도서·신문: 3억원 이하 *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② 공연·박물관·미술관: 7,500만원 이하

(2) 개정이유

- 기재부-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6.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126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공제대상) ①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②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9.4원, 온라인발급: 8.4원) <신 설>	☐ 적용기한 신설 } ○ (좌 동) ○ (적용기한) '22.12.31.

(2) 개정이유

-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97.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129의2, 조특령 §12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저축지원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 특례 적용 제한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모든 저축지원 과세특례로 확대 ○ (신규 가입 가능한 모든 저축지원 특례*)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및 확인기한 ○ (절차) 국세청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각 금융기관에 통보 ○ (기한) ISA의 경우 가입·연장 다음해 2월말,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다음해 4.15일 ○ (의견제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2개월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 확인절차 및 확인기한 조정 ○ (절차) 국세청장은 요건 충족 여부를 은행연에 통보, 금융기관은 은행연을 통해 조회 ○ (기한) 가입·연장 다음 해 4.30일 -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10.31일까지 재확인 ○ (의견제시) 14일 이내에 의견제시 가능 - (좌 동)

(2) 개정이유

-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배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절차 효율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가입·보유·취득·연장분부터 적용

98.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2.12.31.

(2) 개정이유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99. 조세지출예산서에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내역 포함
(조특령 §13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 추 가 >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내용 추가 (좌 동)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내역 및 사유

(2) 개정이유

-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적용

100.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14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좌 동) ○ 10년

(2) 개정이유

-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101.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통합·명확화
(조특법 §146의2, 조특령 §137의2, 조특칙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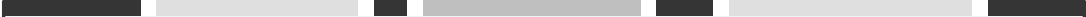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각 과세 특례별 추징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의무저축 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 (공모리츠) 의무보유기간 미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 ○ (재형저축) 의무보유기간 미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 ○ (하이일드펀드) 의무계약기간 미충족 시 과세특례 미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 계약기간 미충족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장병내일준비적금) 의무기간 미충족 시 감면받은 세액 추징 ○ (청년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지 시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먼저 추징 - 요건 충족 확인 시 추징금액 환급	☐ 모든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의 추징규정 통합 * 조특법 §26의2, §27, §29, §66부터 §68, §87, §87의2, §87의5부터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 §89의3, §91의6, §91의12, §91의14, §91의15, §91의17부터 §91의19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좌 동)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 추징의무 제외 ○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 ○ 자산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 단, 계약기간 연장 이전 소득과 이후 소득을 구분가능한 경우 제외
--------------------	--

(2) 개정이유

-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추징규정 통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추징 제외 사유 명확화



농 립 특 례 규 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된 주요내용】

1.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 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
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대상 농기자재 등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6.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31459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47호(2021.3.16.)

1. 공급받는 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 계열화사업의 요건 합리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 농업 중 작물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등 ○ 축산계열화사업자 - (영세율 적용) 위탁·계약 사육용 사료만 적용	☐ 축산계열화사업 요건 합리화 (좌 동)
☐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 축산계열화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농림부에서 고시 ○ 축산업 주업 요건 * 총수입금액의 70% 이상 축산업 영위	○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자 요건 합리화로 축산업 지원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6③ 신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1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면세유 사후관리 ○ 한국해운조합은 직전월 면세유 사용량을 해양수산부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 추 가 >	☐ 사후관리 강화 ○ (좌 동) ○ 한국해운조합은 직전연도 면세유 공급 관련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

(2) 개정이유

- 면세유 공급에 대한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 '21.2.17.이 속하는 사업연도 면세유 공급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일부 농업기계를 환급대상으로 전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별표1) ○ 농산물 건조기 ○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 *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선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삭 제> <삭 제>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별표5) <추 가> <추 가>	○ 농산물 건조기 ○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2) 개정이유

- 농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방식 합리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 김양식용 유기산	☐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2) 개정이유

-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대상 농기자재등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1,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스피드스프레이 ○ 동력이식기 ○ 동력탈곡기 ○ 동력시비기	☐ 명칭변경 ○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정식기 ○ 탈곡기 ○ 비료살포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동력예취기 ○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 예취기 ○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드론) ○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2) 개정이유

-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기자재등 명칭을 변경

6.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 동력경운기 ○ 동력이앙기 ○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 ○ 예도형 동력예취기 ○ 동력이식기 ○ 동력예취기 ○ 동력탈곡기 ○ 동력시비기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농업용 동력제초기 ○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	☐ 범위 확대 및 명칭변경 ○ 경운기 ○ 이앙기 ○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어) ○ 예도형 예취기 ○ 정식기 ○ 예취기 ○ 탈곡기 ○ 비료살포기 ○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드론) ○ 동력제초기 ○ 농업용 굴착기(1톤미만)

(2) 개정이유

-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농업기계 명칭을 변경



증 권 거 래 세 법

[증권거래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법 · 시행령 개정일자】

- 법률: 제17655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1290호(2020.12.29.)

1.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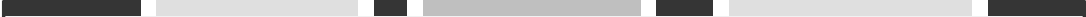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세율 ○ (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코스닥) 0.25% ○ (코넥스) 0.1% ○ (비상장·장외거래) 0.45%	☐ 세율 단계적 인하(△0.1%p) <table><tr><th>구분</th><th>현행</th><th>'21~'22년</th><th>'23년</th></tr><tr><td>코스피*</td><td>0.1%</td><td>0.08%</td><td>0%</td></tr><tr><td>코스닥</td><td>0.25%</td><td>0.23%</td><td>0.15%</td></tr><tr><td>코넥스</td><td>0.1%</td><td>0.1%</td><td>0.1%</td></tr><tr><td>기 타</td><td>0.45%</td><td>0.43%</td><td>0.35%</td></tr></table>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구분	현행	'21~'22년	'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 타	0.45%	0.43%	0.35%																		

(2) 개정이유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교 육 세 법

[교육세법]

【개정한 주요내용】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교육세법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31455호(20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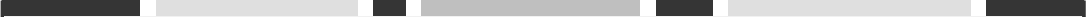
1.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교육령 §4①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 ② ①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포함) ② 외환매매손익	☐ 수익금액 범위 명확화: 화폐성 외환평가이익 포함 ① (좌 동) ② 외환매매손익 (법인령 §76①,②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포함)

(2) 개정이유

- 외환매매손익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이 포함됨을 명확화



국 제 조 세 분 야

[국제조세분야]

【개정한 주요내용】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제도 개선
 - ①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 ③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3.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제출기한 연장 등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
6.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
8.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 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
 -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 ③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
 - ④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절차 규정
 - ⑤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
9.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도 개선
 - ①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②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
 - ③ 해외금융계좌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입법

- 10.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II.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 1.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제도 정비
 - ①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허용
 -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3.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5.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 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
-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51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1448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40호(2021.3.16.)

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분야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①, 국조령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의 정의 ①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이상 직·간접 소유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신 설> ③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 (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④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 (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 제3자 소유지분 계산 시 친족관계 포함 ○ (좌 동)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 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 (좌 동)

(2) 개정이유

-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제도 개선

① 소급적용기간 확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기간 일원화 (국조법 §14, 국조령 §31①)

* 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 소급적용 허용기간 ☐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 쌍방 APA: 상호합의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일원화 ☐ 쌍방·일방 APA: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급적용기간 확대)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수정신고·경정청구기간 일원화) '21.2.17.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제출받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국조령 §26①, 3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부수 * 사전승인 결과 점검을 위해 매해 제출(과세연도 종료 12개월 이내) ○ (사전승인 신청서) 2부 ○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4부	<삭 제>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사전승인을 신청하거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국조령 §10~§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 ❶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❷재판매가격방법, ❸원가가산방법, ❹거래순이익률방법, ❺이익 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 - ❶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험·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 ▪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 - ❷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할인법 ○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	○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 (좌 동) - ❸ 간주정상이자율* ※ ❶~❺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

(2) 개정이유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식 명확화

3.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6, 국조령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같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 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말까지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제출시기 연장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 (좌 동)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국조령 §34① 2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요건(①&②) ○ (매출액) 1,0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500억원 초과	☐ 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그 국외본점·국외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하여 산정

(2) 개정이유

- 외국법인 지점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
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 마련(국조령 §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2배 < 신 설 >	☐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출자금액과 차입금의 배분기준 ○ (좌 동) ○ (공통 출자금·차입금 업종별 배부 의무화)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배분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 또는 손금액

(2) 개정이유

-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2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 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 (좌 동) ○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이자상당액 포함) (삭 제)

(2) 개정이유

-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7.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①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② 지식재산권의 제공 ③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④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추 가>	☐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좌 동) ○ ① ~ ④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선박·항공기·장비의 매각손익은 제외

(2) 개정이유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42, §46, 국조령 §8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 개시* *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① 법원의 확정판결 ② 신청자의 무자격 ③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 ④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경과 ☐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일 ○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신청철회일	☐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조정 ① 법원의 확정판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에 대응하여 체약상대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거래 당사자(거주자-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국외 법원의 확정판결)하는 경우 •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우리 법원의 확정판결)하는 경우 ②~④ (좌 동) ☐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확정판결일 ○ (좌 동)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시) '21.1.1. 이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종료) '21.1.1.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②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호합의절차상 상대채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①, ② 동시 충족) ①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 ②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

(2) 개정이유

-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호합의 신청인 동의 절차 신설(국조령 §8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 ○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결전까지 과세당국에 상호합의 진행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신 설>	<삭 제> ☐ 상호합의에 대한 납세자 동의절차 ① (상호합의 결과 통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 종결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합의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② (동의 여부 제출)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동의 및 쟁송 취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③ (부동의 효과)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에 부동의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한까지 동의여부 및 쟁송취하 여부를 미제출하는 경우 상호합의 철회로 간주

(2) 개정이유

-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및 세부절차 규정
(국조법 §43, 국조령 §85, §86, §8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호합의상 중재의 세법상 근거 마련 ○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당국과 제3자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중재)을 요청할 수 있음(실제 시행은 조세조약에 따름) ○ 중재 신청,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조세조약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 중재 진행 절차 ○ (중재 신청) 중재신청인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중재신청인에게 중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 가능 ○ (의견 제출) 중재신청인은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의 중재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 가능 ○ (비용 부담) 의견 제출에 관련한 비용은 중재신청인이 부담, 나머지는 과세당국이 부담 □ 중재인 선정 절차 ○ (중재인 자격 요건) ①조세·법률·회계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②중재 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위임) ○ (중재인 제외 사유) 다만, 상호합의 신청 당사자 및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 중재 신청인의 소속 직원,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현재 당사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자 등(고시로 규정)

(2) 개정이유

- 조세조약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

⑤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거부사유 명확화(국조령 §9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호합의 고지·징수유예 신청 거부사유 * 납세자는 상호합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징수 유예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신청인이 과거에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 조세채권 일실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체납 관련 거부사유 구체화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있는 경우 ○ (좌 동)

(2) 개정이유

-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등 신청 시 거부사유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후 상호합의에 따른 고지·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도 개선

①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국조법 §52, 국조령 §9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은행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등 <추 가>	☐ 신고대상 계좌 확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해외금융계좌 취급 해외금융회사: 국외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추 가>	☐ 해외금융회사 추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와 유사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 해외금융계좌 잔액* 계산방법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신 설>	☐ 국외 가상자산 거래계좌의 잔액 계산방법 신설 ○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 :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수량 x 최종가격* *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2) 개정이유

-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태료 감경(국조령 §1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		☐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이하	(좌 동)
20억~50억	2억+20억 초과 15%	20억~50억	
50억 초과	6.5억+50억 초과 20%	50억 초과	6.5억+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 (감경규정) 50% 이내 감경 -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 <추 가>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과태료 상한액 설정) '21.2.17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간주의 예외규정 상향 입법
(국조령 §94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실질 소유자 간주 ○ (요건) 내국인이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해외금융 계좌를 보유 ○ (효과)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 ※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 ○ (예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 동 규정 적용 배제(고시)	☐ 실질소유자 간주제도의 예외 규정 상향 입법 ○ (좌 동) ○ (좌 동) ○ (예외) 고시 → 시행령 상향입법

(2) 개정이유

- 납세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국조법 §56, 5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 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등에 대한 소명요구 가능	☐ 소명요구 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 국세청장)

(2) 개정이유

- 행정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소명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법인세법> ☐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소득·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소득법 §165의2, 법인법 §121의2)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과태료</th></tr> </thead> <tbody> <tr> <td>해외 부동산</td><td>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td></tr> <tr> <td>해외직접투자</td><td>(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td></tr> </tbody> </table>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	「소득세법」 (§119 10호 및 §156의8), 「법인세법」 (§93 8호 및 §98의7)으로 이관 「국제조세조정법」으로 이관 (§58, §59, §63)
구분	과태료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1억 원 한도)						
해외직접투자	(개인) 건별 500만 원, (법인) 건별 1,000만 원 ※ 年 5천만 원 한도						

(2)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

Ⅱ. 비거주자·외국법인 관련

1.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제도 정비

①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허용 (소득법 §57, 법인법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2) 개정이유

-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인정
명확화(소득령 §55① 8호, 법인령 §19 10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필요경비 (법인의 경우 손금)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매입 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등 ○ 제세 공과금 <추 가>	☐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 세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또는 손금) 인정 ○ (좌 동) ○ 제세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 포함

(2) 개정이유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외국납부세액공제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소득법 §57, 법인법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익금 산입 ○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①세액공제와 ②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①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손금산입 방식 삭제) <삭 제>

(2) 개정이유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연구개발비의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특례 보완(소득칙 §60, 법인칙 §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비 요건 ○ 「법인세법」상 손비 <추 가> ☐ 연구개발비를 매출액·매출총이익 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 ○ (좌 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위탁·공동 연구 포함)에 지출된 비용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일반적인 관리·지원 등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별 한도 방식 및 국외사업장 관련 계산 방식 보완 ○ ①매출액 방법, ②매출총이익 방법을 적용시 국가별 국외 원천소득 대응비용 산출 ○ 국외사업장의 국외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국내소득에서 제외(국외자회사 매출·사용료와 동일하게 취급)												
① 매출액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R&D활동</th><th>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h></tr> </thead> <tbody> <tr> <td>국내>국외</td><td>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td></tr> <tr> <td>국내<국외</td><td> $\frac{\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td></tr> </tbody> </table> ② 매출총이익 방법 <table border="1"> <thead> <tr> <th>R&D활동</th><th>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th></tr> </thead> <tbody> <tr> <td>국내>국외</td><td>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75\%}{\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text{매출총이익} + \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td></tr> <tr> <td>국내<국외</td><td>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25\%)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td></tr> </tbody> </table>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국외	$\frac{\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75\%}{\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text{매출총이익} + \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25\%)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												
국내<국외	$\frac{\text{내국법인 총 매출} + \text{외국자회사 등 매출}}{(\text{연구개발비용} \times 50\%)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												
R&D활동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75\%}{\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text{매출총이익} + \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국내<국외	$\frac{(\text{연구개발비용} \times 25\%) + (\text{※ 위의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text{국외원천 사용료(royalty)}}$												

(2) 개정이유

- 적용범위 명확화 및 계산방식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법 §5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국외소득×국내원천징수세율(14%) 한도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등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 <추 가>	☐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법인과세 신탁재산

(2) 개정이유

-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 (법인법 §75의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 부과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 (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

(2)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법 §119·§126·§156, 소득령 §179·§183·§207,
법인법 §92·§93·§98, 법인령 §129·§132·§1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대여·인출시 :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세율) $\text{Min}[\text{양도가액} \times 10\%, (\text{양도가액} - \text{취득가액 등}^*) \times 20\%]$ * 가상자산 채굴 시 전기료 등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 시 인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출이 없는 경우는 다음연도 1.10까지

	○ (납부액) 현금·가상자산인출 시마다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월간 합계액 $\text{인별 누적 원천징수액}^* \times \frac{\text{인별 인출액}^{**}}{\text{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자 인별 자산총액}}$ * Min [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20%] ** 가상자산을 인출한 경우 인출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의 시가×수량 - 가상자산 인출 시 현금 원천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원천징수 하여 즉시 현금으로 매각 ○ (원천징수 대상 확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에 필요한 정보 요청·확인* 가능 * 원천징수대상 변동여부 확인주기 : 3년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	--

(2) 개정이유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

5.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법 §119, 소득령 §178의8, 법인법 §93, 법인령 §131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파생결합사채·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추 가> <추 가> <추 가>	□ 현행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유지 ○ 이자소득: '20년 세법개정으로 배당 → 이자로 분류되는 소득 제외 - '파생결합사채 이익' 제외 ○ 배당소득: 신설되는 금융투자 소득에서 제외하여 현행 유지 - 파생결합사채 이익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금융투자 소득이 원천인 분배금 전부 포함(일부 분배금* 비과세→ 과세) * 기존 과세 제외되던 국내주식 및 주식대상 장내파생상품 손익 •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ETF), 회사형 및 비적격 집합투자증권 양도 제외 -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익,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ETN) 양도 제외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구분 유지 및 집합 투자기구이익 중 일부 분배금에 대한 과세 전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국외전출세 조문 정비
(소득법 §126의3 ~ §126의12, 소득령 §183조의5 ~ §183조의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94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식 등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부동산 주식) ☐ 기본공제금액 : 250만원	☐ 과세대상 조문정비 ○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등 (국외주식 제외) ○ (좌 동) ☐ 기본공제금액: 연 5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 주식: [5천만원] -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 * 상장주식,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 나머지 주식: 연 250만원
☐ 구분계산 규정 ○ 국외전출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소득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추 가)	☐ 구분계산 소득 추가 ○ (좌 동)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조문이동) 소득법 §118의9 ~ §118의18 삭제, §126의3 ~ §126의12 신설
소득령 §178의8 ~ §178의12 삭제, §183의5 ~ §183의9 신설

(2)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3.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7.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개선(소득법 §164의2, 법인법 §120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비거주자에 지급하는 자 <추 가>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 (좌 동) -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 (좌 동)

(2) 개정이유

- 납세절차 간소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 가 가 치 세 법

[부가가치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 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 ②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③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
- ④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
- ⑤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2.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④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⑥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 ⑦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 ⑧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 ⑨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 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⑪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 ⑫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⑬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 ⑭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⑮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 ⑯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
 - ⑱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
 - ⑲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 ⑳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규정
4.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5.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
 8.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1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1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1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

【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758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087호(2020.10.7.), 제31445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46호(2021.3.16.)

1.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①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전환 (부가법 §3, 부가령 §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를 수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도시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를 수탁자 원칙으로 전환 ○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원칙) 수탁자 - (예외) 위탁자 ▪ 위탁자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지배하는 경우 * ①관리형 토지신탁, ②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2) 개정이유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3) 적용시기

- '22.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부가법 §3의2, 부가령 §5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익자 등에 대한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 신탁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분배받거나 귀속된 수익 및 재산가액을 한도로 수익자 등*에게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방식 ○ 귀속재산의 가액 :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 -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기준에 따른 가격

(2) 개정이유

- 수탁자 과세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 부과

(3)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별 별도의 납세의무 부과(부가법 §3, §8, §58의2, 부가령 §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납세의무 부과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 봄 ○ (채납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채납된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채납처분 ○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 (사업장기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 개정이유

- 수탁자 과세기 신탁재산별 납세의무 부과

(3) 적용시기

- (채납처분)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자등록)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 규정(부가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수탁자가 연대납세의무 ○ 해당 신탁의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개정이유

- 공동수탁자의 납세의무 명확화

(3) 적용시기

-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부가령 §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하는 매입세액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 설>	☐ 신탁재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수탁자(위탁자)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① 「신탁법」 제3조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일 것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 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2) 개정이유

-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용역의 공급장소 ○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신 설>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 (좌 동) ○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2) 개정이유

-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추 가>	☐ 기준금액 상향 ○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 개정이유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2)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3)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③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추 가>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좌 동)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 (좌 동)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좌 동)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 가치율	구 분	부가 가치율
1. 전가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원칙) 영수증 발급 ○ (예외) 없음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부가법」 §73①, 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법」 §73③ 업종

(2)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
(부가령 §70③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2) 개정이유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⑦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승§73③,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발행 요건 변경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좌 동) <삭 제> ○ (좌 동)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⑧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령 §73조⑩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 적용대상(부가령 §73) 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 설>	☐ 간이과세자 포함 ○ (좌 동) ○ 간이과세자 -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⑨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2)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 (공제율) <table><tr><th></th><th>공제율</th><th>'21.12.31.까지</th></tr><tr><td>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td><td>2.0%</td><td>2.6%</td></tr><tr><td>기타 사업자</td><td>1.0%</td><td>1.3%</td></tr></table>		공제율	'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좌 동) ○ 공제율 단일화 <table><tr><th>공제율</th><th>'21.12.31.까지</th></tr><tr><td>1.0%</td><td>1.3%</td></tr></table>	공제율	'21.12.31.까지	1.0%	1.3%
	공제율	'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21.12.31.까지													
1.0%	1.3%													

(2) 개정이유

-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⑪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좌 동)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좌 동)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허용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⑫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발급받은 과세공급대가 업종 세금계산서등에 ×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text{총공급대가}}$ × 부가 적힌 매입세액 총공급대가 가치율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과세공급대가 받은 재화와 용역의 × $\frac{\text{해당 과세기간의}}{\text{총공급대가}}$ × 0.5% 공급대가 합계액 총공급대가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
(부가령 §86③, §11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0} \right)$ ○ 재고납부세액(가산) -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0} \right)$	□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 \right)$ ○ (좌 동)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 \right)$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 공급대가 × 0.5%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⑭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법 §65, 부가령 §1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공제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업 종</th><th>공제율</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음식점 (개인)</td><td>과세표준 4억 원 이하</td><td>9/109 (‘21년 말까지)</td></tr> <tr> <td>과세표준 4억 원 초과</td><td>8/108</td></tr> <tr> <td colspan="2">음식점(법인)</td><td>6/106</td></tr> <tr> <td rowspan="2">제조업</td><td>과자점업 등</td><td>6/106</td></tr> <tr> <td>개인,중소기업</td><td>4/104</td></tr> <tr> <td colspan="2">과세유흥장소, 기 타</td><td>2/102</td></tr> </tbody> </table>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9/109 (‘21년 말까지)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9/109 (‘21년 말까지)																			
	과세표준 4억 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6/106																			
	개인,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 타		2/102																			

(2) 개정이유

-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⑮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66, 부가령§1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좌 동)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추 가>	☐ 신고사유 확대 ○ (좌 동)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신고시 제출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강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⑩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6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납부 ○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제출서류 - (좌 동)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강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 사업자의 인정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추 가>	☐ 신고서 항목 추가 ○ (좌 동)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2)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강화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⑱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7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❶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❷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추 가> ○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 (좌 동) ○ (좌 동) ❸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것 ○ (좌 동)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추 가> <추 가> <신 설>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 (좌 동)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60②,③1·3·5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60⑥)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1% → 0.5%

(2)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1.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⑳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부가령 §117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보관 ☐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 세금계산서·영수증 보관 시 장부기록의무 이행 간주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 ☐ (좌 동)

(2)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부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 정비

(3)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폐업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부가령 §13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폐업신고 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신고 확인서*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첨부서류 간소화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5.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일 이내 * 상호변경,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시 신청일 당일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 3일 이내 → 2일 이내 * (좌 동)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부가령 §19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좌 동)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개정이유

-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및 소비 진작

(3) 적용시기

- '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주한미군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 범위 명확화(부가령 §33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추 가>	☐ 영세율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 - 미합중국군대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 추가

(2) 개정이유

- 주한미군 등에 재화·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

8.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 (부가령 §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12.31.	☐ 적용기한 폐지 <삭 제>

(2) 개정이유

-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종교단체의 범위 명확화(부가령 §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공익목적 사업 등*을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상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상증령 §12 각 호, 부가칙 §34① <추 가> ○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추 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그 소속단체를 추가 ○ (좌 동) - 종교단체의 경우, 그 소속단체를 포함 ○ (좌 동) -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를 포함

(2) 개정이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에 그 소속단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1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 (좌 동) ○ 3억 원 → 2억 원 이상

(2)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1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 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법 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좌 동)

(2) 개정이유

-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3) 적용시기

- '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연 1.8%	☐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

(2) 개정이유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3) 적용시기

- '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의 표준인증 수행기관 변경 (부가칙 §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신청 시 첨부 서류 ○ 위험관리계획서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대표자 보안 서약서 ○ 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 신 설 >	☐ 첨부서류 변경 } ○ (좌 동) < 삭 제 >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 요건 ○ 국세청장의 표준인증을 받을 것

(2) 개정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설비·시스템 등록을 위한 표준인증 기관 변경에 따른 제도 정비

(3) 적용시기

- '21.3.16.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인 지 세 법

[인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규정 삭제
2.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 추가

【인지세법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31457호(2021.2.17.)

1.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규정 삭제(인지령 §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 신청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 중 유·무선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삭 제>

(2) 개정이유

-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2.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 추가 (인지령 §5의2①·②)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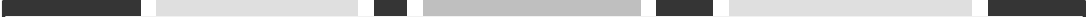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 상품권 정의 규정 ○ (상품권 및 선불카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u>무기명 증표</u>	☐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과세대상에 포함 ○ 무기명 증표 → <u>증표</u> (기명·무기명 포함)

(2) 개정이유

- 상품권 과세범위 합리화

(3) 적용시기

- '21.3.1.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폐지
3.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
4.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
5.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6.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개별소비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47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0805호(2020.6.30.), 제31383호(2021.1.12.),
제31451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4호(2021.3.16.)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조정(개소법 §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 * 연초의 ‘잎’이 원료인 경우로 한정 <추 가> <추 가>	☐ 과세대상 담배범위 확대 ○ (좌 동) ○ 연초의 잎 외의 다른 부분(뿌리·줄기 등)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 * 향후 시장상황 변화 및 신제품 등장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계획

(2) 개정이유

-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근거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폐지 (개소법 §20의2, 개소령§3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환급 특례 ○ (개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해 일정세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세액감면 적용 ○ (환급세액) 기본세율과 취사난방용 세율 간 차액(도입 시 : 18원/kg, 현재 : 0원/kg)을 환급	<삭 제>

(2) 개정이유

-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 개편('19년)으로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취사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특례 제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 개소령 §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 (적용사유)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 (세율 조정 범위) $\pm 30\%$ <신 설>	☐ 적용한도 신설 } ○ (좌 동) ○ (적용한도) 물품 당 100만 원

(2) 개정이유

-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 §2) ☐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 (좌 동) ☐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을 제외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2) 개정이유

- 이중과세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개소령 §33, 교통세령§2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항행 선박 석유류에 대한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과세 - (용도변경 범위) 외국항행 선박용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 (좌 동) - (예외사유 신설) 외국항행 종료 후 국내 재입항 시 유류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2) 개정이유

- 이중과세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정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추정사유 보완 (개소령 §34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세액 추정사유 ○ 과세기간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환급세액 추정사유 보완 ○ 확정신고기한 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주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
2. 주류 위탁 제조 요건, 위탁 제조 주류의 납세의무자 등 신설
3.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 주류 제외
4.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
5.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
6.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및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7.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9.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주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53호(2020.12.22.), 제17762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449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8호(2021.3.16.)

1. 조미용 주류에 대하여 주세 비과세(주세법 §2, 주세령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품목 ☐ 알코올분 6도 미만 의약품 <추 가>	☐ 과세대상에서 조미용 주류 제외 ☐ (좌 동) ☐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① & ②) - ①식품의 조리과정에서 풍미 증진을 위하여 첨가되는 것, ②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 * 염분, 당분과 같이 가열하여도 증발되지 않고 남는 주류 첨가물

(2) 개정이유

- 직접 음용할 수 없어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용 주류의 구체적인 범위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 위탁 제조 요건, 위탁 제조 주류의 납세의무자 등 신설 (주세법 §3, 주류면허법 §3·1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세의 납세의무자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자 ○ 주류 수입 시 관세의 납세의무자 <추 가> <신 설>	☐ 주류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 ○ (좌 동) ○ 주류 제조를 위탁한 경우 주류 제조 위탁자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❶ 위·수탁자 모두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면허가 있을 것 ❷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않을 것
☐ 주류 제조·반출 정지요건 ○ 제조장 이전 미신고, 규격 위반 주류 제조, 주세 포탈 등 <추 가>	☐ 주류 제조·반출 정지요건 추가 ○ (좌 동) ○ 주류의 위탁제조 요건 위반 및 위탁제조 미신고

(2) 개정이유

-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적용 시 위탁 제조주류 제외(주세령 §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 주류제조업자 및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특례				☐ 과세표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위탁제조주류 제외	
○ 맥주·탁주의 과세표준 수량				○ (좌 동)	
		반출량 구간	과세표준 수량		
맥주	소규모	200kl 이하	반출량 × 40%		
		500kl 이하	80kl + (200kl 초과분 × 60%)		
		500kl 초과	260kl + (500kl 초과분 × 80%)		
	중소	500kl 이하	반출량 × 70%		
500kl 초과		350kl + (500kl 초과분 × 100%)			
탁주	소규모	5kl 이하	반출량 × 60%		
		5kl 초과	3kl + (5kl 초과분 × 80%)		
<단서 신설>					
○ 약주·청주의 과세표준 가격 (소규모주류제조자만 해당)					
반출량 구간		가격			
5kl 이하		통상가격 등* × 60%			
5kl 초과		통상가격 등 × 80%			
* 할인·에누리 등을 제외하고 시장 내에서 통상 거래되는 가격과 통상가격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제조원가에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가격				○ (좌 동)	
<단서 신설>					
				- 단, 위탁제조 주류 제외	

(2) 개정이유

- 위탁제조를 이용한 과도한 주세 감면 혜택 배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2021년 적용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맥주·탁주의 세율* *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조정하고 매해 31.~다음해 2월말까지 적용 $\text{당해 세율} = \text{직전연도 12월말 세율} \times (1 + \text{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21.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 당 830.3원 - (탁주) 1ℓ 당 41.7원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세율조정 ※ '20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 ○ '21.3.1.~'22.2.28.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 (맥주) 1ℓ 당 834.4원(4.1원 ↑) - (탁주) 1ℓ 당 41.9원(0.2원 ↑)

(2) 개정이유

-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 입법(주세령 §32,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태료 부과기준 ○ 주류 및 물량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별표 5*)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 7(국세청 훈령 제2394) 상향 입법 < 과태료 부과기준 > <table><tr><th>물량별 \ 주류 종류별</th><th>탁주</th><th>위스키 및 브랜디</th><th>그 밖의 주류</th></tr><tr><td>50ℓ 이하</td><td>10만원</td><td>40만원</td><td>20만원</td></tr><tr><td>50ℓ 초과 100ℓ 이하</td><td>20만원</td><td>60만원</td><td>40만원</td></tr><tr><td>100ℓ 초과 500ℓ 이하</td><td>40만원</td><td>140만원</td><td>80만원</td></tr><tr><td>500ℓ 초과 1,000ℓ 이하</td><td>60만원</td><td>200만원</td><td>120만원</td></tr><tr><td>1,000ℓ 초과 3,000ℓ 이하</td><td>100만원</td><td>400만원</td><td>200만원</td></tr><tr><td>3,000ℓ 초과 5,000ℓ 이하</td><td>200만원</td><td>500만원</td><td>400만원</td></tr><tr><td>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td><td>400만원</td><td>500만원</td><td>500만원</td></tr><tr><td>10,000ℓ 초과 15,000ℓ 이하</td><td>500만원</td><td>500만원</td><td>500만원</td></tr><tr><td>15,000ℓ 초과 20,000ℓ 이하</td><td>1,000만원</td><td>1,000만원</td><td>1,000만원</td></tr><tr><td>20,000ℓ 초과</td><td>2,000만원</td><td>2,000만원</td><td>2,000만원</td></tr></table> ○ 과태료 부과원칙 - 위반 정도, 횟수,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 적용 - 양형기준(1/2 범위) 설정 -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명시	물량별 \ 주류 종류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ℓ 초과 15,000ℓ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ℓ 초과 20,000ℓ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ℓ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물량별 \ 주류 종류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ℓ 초과 15,000ℓ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ℓ 초과 20,000ℓ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ℓ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6. 주류 첨가재료의 상향 입법 및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주세령 별표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에 허용되는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식물 ○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솔비톨, 수크랄로스, 아세실팜칼륨 등 ※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	☐ 첨가재료 추가 ○ 주세령 별표에 상향 입법
☐ 주류 첨가재료 ○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등 ○ 탄산가스 ○ 「식품위생법」상 첨가물로 허용된 보존료 및 효모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 <추 가>	☐ 첨가재료에 질소 추가 ○ (좌 동) ○ 기체질소

(2) 개정이유

- 시행령·고시에 분산된 내용을 시행령에서 통일하여 규정하고, 주류 첨가재료를 추가하여 다양한 소비자 선호를 충족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단계) 장(章), 절(節), 조(條) ○ 5장, 7절, 57조 ☐ 장(章) 및 절(節) 구분 ○ 제1장: 총칙 -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제2절 주류업단체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5절 주세의 보전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 (2단계) 장(章), 조(條) ○ 7장, 27조 ☐ 목적에 따라 장(章) 구분 ○ (좌 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장: 신고와 납부 ○ 제4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5장: 면세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제7장: 벌칙

(2) 개정이유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8. 주세법 시행령 분법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단계) 장(章), 조(條) ○ 4장, 70조 ☐ 장(章) 구분 ○ 제1장: 총칙 ○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의 면허 ○ 제3장: 주세의 납부·징수 ○ 제4장: 보칙	☐ (2단계) 장(章), 조(條) ○ 7장, 32조 ☐ 장(章) 구분 ○ (좌 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 ○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45~§59 이관) ○ 제3장: 신고와 납부 ○ 제4장: 결정·경쟁과 징수 및 환급 ○ 제5장: 면세 ○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은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이관(현행 주세령 §60~§67 이관) ○ 제7장: 벌칙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9. 주세법 시행규칙 분법 및 서식 정비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條) 구분 ○ 목적 ○ 주류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 ○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 과세표준의 신고 ○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면세승인절차, 납세담보의 제공 ○ 주류제조원료 ○ 납세증지를 첨부하는 주류 ○ 단수의 처리, 수수료 ○ 서식 - 주류 면허·규제행정 관련 및 조사원증 * 주류(밀술·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등 8개 * <신 설> - 주세의 신고·납부관련 및 조사원증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주류출고 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개	☐ 조(條) 구분 ○ (좌 동)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좌 동) ○ (좌 동)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좌 동)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분법에 따라 서식 정비 - 주류면허칙으로 이관 * 주류(밀술·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등 8개 *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서 - (좌 동)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월별주류반출 명세서, 주류수불상황표 등 17개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개정된 주요내용】

1. 주류 위탁제조 관련 신고의무 신설
2.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
3.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
4.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5.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6. 주류 제조·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7.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
8.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
9.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10.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11.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일자】

- 법률: 제17761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450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9호(2021.3.16.)

1. 주류 위탁제조 관련 신고의무 신설(주류면허법 §3, 주류면허령 §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류 위탁제조에 관한 신고의무 신설 ○ (신고의무자) 주류 제조 위탁자 ○ (신고사유) 주류의 위탁제조가 개시되거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주류 제조 위탁자(합병·분할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 주류 제조 수탁자, 주류의 종류·규격, 제조장, 계약된 제조기간·수량 및 원료용 주류 구입자의 변경 ○ (신고기한) 위탁제조 개시일 또는 중요사항의 변경 적용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 (신고내용) 주류 제조 위·수탁자의 인적사항, 위탁제조 주류의 종류·규격·제조방법, 제조장의 위치, 제조기간·수량 등 ○ (첨부서류) 위탁 계약서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개정이유

- 위탁제조를 허용하여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2. 홍보 등 판매 목적 외 주류 제조 허용(주류면허법 §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허대상 주류 제조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류제조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물로 희석하는 경우 ○ 「주세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추 가>	☐ 홍보 등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제조장 방문객에게 판매가 아닌 무상 제공 목적으로 첨가물*을 섞는 등 제조면허 외의 주류를 제조한 경우 - 단, 제조장에서 출고된 경우 제외(→면허취득 필요) *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 및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식품

(2) 개정이유

- 주류 제조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를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면허 제한 사유 ○ 모든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 주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한정 ○ 모든 법률 → 주류면허와 직접 관련 있는 법률*로 한정 * 「조세범 처벌법」, 「식품위생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 §31의2제1호, 「청소년 보호법」 §56, §58 3호·6호, §59 1호·2호·6호·7호·7호의2·7호의3

(2) 개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면허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주류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주류면허법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요건 ☐ 면허받은 주류를 2년간 제조하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주류의 면허 취소	☐ 제조면허 취소 범위 합리화 ☐ 모든 주류 → 해당 주종의 면허만 취소

(2) 개정이유

- 취소범위 합리화를 통한 주류 제조자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 제조면허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5.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주류면허법 §1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가격신고 의무 ○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 변경, 신규 제조 주류 반출 시 해당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단서 신설>	☐ 주류 가격신고 대상 축소 ○ (좌 동) - 맥주·탁주*는 제외 * '20.1.1.부터 종가세→종량세 전환

(2) 개정이유

-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탁주는 가격신고가 불필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 제조·반출 정지 후 계속행위 신청자 범위 확대 (주류면허령 §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제조·반출 정지 및 면허취소 시 계속행위 ○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제조면허 취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에 따라 제조·반출 허용 - (계속행위 내용)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취소 후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조·반출 가능 * 면허취소 시는 3개월 - (신청요건) 정지처분 또는 취소 시에 제조장 내 반제품이 현존하는 경우 - (신청인) 면허를 받은 자	☐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도 신청인에 추가 ○ (좌 동) - 위탁 제조 주류의 경우, 위탁 제조 계약의 상대방 추가

(2) 개정이유

- 제재처분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위탁제조 계약 상대방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7. 위탁제조계약 상대방에 대한 면허 취소 사실 등의 통지절차 신설(주류면허법 §1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제조계약의 당사자에게 면허취소 등을 한 경우, 계약의 다른 상대방에게 면허취소 사실 등을 통지 ○ (통지내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당사자가 주류 제조 면허의 취소 등의 사유*로 주류의 제조·반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 * ① 주류의 제조·반출의 정지처분(주류면허법 §11), ②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주류면허법 §13), ③ 주류 제조면허 취소·중단 신청에 따른 면허의 취소·중단 및 폐업신고(주류면허법 §15) ○ (통지하는 자) 정지처분 등을 한 관할세무서장 ○ (통지상대방) 주류 제조 위탁계약의 다른 상대방 ○ (제조·반출 정지) 통지를 받은 주류 제조 수탁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날부터 해당 위탁 제조 주류의 제조·반출을 정지

(2) 개정이유

-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위탁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8.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운송 허용(주류면허령 §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자 등* 주류 판매 시 운반방법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 소유차량, 임차차량*으로 운반 *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사업자 운행 차량 포함 ○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 *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 부착(「주류의 양도·양수 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3·§8) - (예외) 다음의 경우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제외 ① 수출용 주류 컨테이너 운반 ② 도서지역에 선박·항공운송 <추 가>	☐ 택배이용 시 주류 운반용 차량표지 제외 ○ (좌 동) ③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주류를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2) 개정이유

- 주류 운반수단을 다양화하여 주류제조자 등의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주류를 운반하는 분부터 적용

9.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 제조방법 승인 ○ 주류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 방법을 변경·추가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필요 <신 설>	☐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은 신고로 절차상 의무 완화 ○ (좌 동) ○ 식품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추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첨가물 배합비율의 단순변경, 일정범위 내 알코올 도수 변경 등

(2) 개정이유

- 경미한 주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절차상 의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추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 제조 위탁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서류 (주류면허칙 §2·4, 별표)

< 시행령 개정내용(§6) >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①주류 제조 수탁자, ②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③위탁 제조 주류 종류, ④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수량, ⑤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 의무 부과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변경신고 대상 ○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 분할하여 변경된 경우 ○ 주류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 설>	☐ 주류 제조 위탁 신규·변경신고 첨부서류 ○ 주류 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변경신고인 경우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 ○ 반출전 주류 분석감정서 ○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2) 개정이유

-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신고의무의 범위·내용 구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주류를 위탁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주류면허칙 별표)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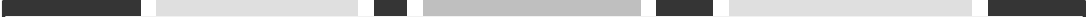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 주류 제조면허 신청 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정관,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 주주·임원명부 등 <추 가> <추 가>	☐ 제조시설관련 첨부서류 추가 ○ (좌 동) ○ 제조장 대지 상황 및 건물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2) 개정이유

- 주류 제조면허 발급심사 및 관리 내실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 세 기 본 법

[국세기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2.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4. 양도담보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의 연장을 국기법으로 이관
5. 납부의 방법 정비
6.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7.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
8.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
9.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10.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
1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12.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13.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
15.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16.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7.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18.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
19.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20.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21.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22.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
23.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
2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25. 부분조사 사유 확대
26.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2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
28.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2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
3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세기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50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1452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3호(2021.3.16.)

1.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국기법 §6, 6의2, 국징법 §1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이행기한 완화 제도 ○ (법정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 ○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통합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 ※ 적용대상 - 법정납부기한 -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 국기법의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중 '납부기한의 연장' 부분은 삭제

(2) 개정이유

- 납부기한 연장(국기법)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을 통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

2.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국기법 §7, §29~34, §85의5①.1호, 국징법 §1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국징법 §13②) ☐ (요건) ❶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 ❷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효과) 양도담보 종료에도 불구 여전히 물적납세의무 부담	☐ (좌 동)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규정)
☐ 송달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국기법 §7) ☐ 송달지연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한 때 이미 기한이 경과 또는 14일 내 도래시 기한연장 간주 - (원칙)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예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는 단축된 기한(단축된 기한 전 도달시) 또는 도달한 날(단축된 기한 후 도달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부기한 연장은 국징법에서 일괄 규정)

(2) 개정이유

- 납부기한 연장(국기법)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을
통합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으로 일원화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국기법 §39, 국기령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을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 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담보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의 연장을 국기법으로 이관 (국기법 §42)

(1) 개정내용

종 전 (국징법 §13)	개 정
☐ 양도담보재산 관련 물적납세의무의 연장(①&② 충족시) ①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 ②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소멸 * 변제 등 채권의 목적 달성 이외의 사유를 의미. 매도담보의 경우 환매조건의 성취·재매매 예약완결권 행사 이외의 경우 포함	<삭 제> ※ 국기법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으로 이관

(2) 개정이유

- 내용상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국기법 규정에 함께 두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이관

5. 납부의 방법 정비(국징법 §12, 국기법 §4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의 방법 ※ 국징령, 국기법에 분산 규정	☐ 국세징수법에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 현금(계좌이체, 자동이체 포함) ○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신용카드 등 i) 신용카드, 직불카드 ii) 통신과금서비스 iii) 그 밖에 i) 또는 ii)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개정이유

- 납부의 방법을 국세징수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

6.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국기법 §47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 (좌 동) ○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47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 ○ (가산세) (미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5%) ○ (한도) 미납부세액의 50%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좌 동)

(2) 개정이유

-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

8.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추가(국기법 §4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가산세 중 한도* 적용대상 * 일반 : 1억원, 중소 : 5천만원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계획 등 보고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의 1% 상당액 ○ 공익법인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불이행 가산세* * 해당연도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 가액의 0.07% ○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분의 0.2~0.3% 등 <추 가>	☐ 한도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상증법 §78⑭) * 자산총액의 0.5%

(2)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5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이자액*을 가산 * 이자율 : 연 1.8% <신 설>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 (좌 동) ○ 경정청구, 불복 결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2) 개정이유

-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 감안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85의6, §9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는 국세청 내 국세통계 센터에서만 기초자료 제공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 (제공자료)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한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예시: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 (제공방법) 국세통계센터 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2) 개정이유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국기령 §2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 대상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개정이유

-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축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국기령 §25의3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방법 ○ 경정청구서* 제출 * 청구인 인적사항,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세액, 경정청구 이유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 설>	☐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 ○ (좌 동) - 원천징수대상자가 이자·배당 등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경정청구서가 관할이 아닌 곳에 잘못 제출된 경우 그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

(2) 개정이유

- 원천징수대상자의 분리과세소득 경정청구에 대한 관할을 명시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13.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국기령 §27의5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등을 위해 국세청에 설치한 위원회

(2) 개정이유

-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 구체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에 따른 가산세 면제 특례 규정(국기령 §2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면제 사유 ○ 세법해석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 ○ (좌 동) ○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 *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한정

(2) 개정이유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의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 ○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기산일 조정 ○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② 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 기한 이후 10일이 지난 날 ③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

(2) 개정이유

-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 부터 30일 ○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 청구일	☐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좌 동) <삭 제>

(2) 개정이유

-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하는 고충민원의 정의 규정 (국기령 §43의3③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충민원의 정의 ○ 납세자가 경정청구, 불복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소기한까지 청구·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2) 개정이유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충민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21.2.17. 전에 경정청구 되어 ‘21.2.17.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도 적용

19.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가능

(2)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0.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면제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 면제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부가가치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간편사업자 가산세 면제 폐지 <삭 제>

(2) 개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의 300%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 ○ (3개월 이내 납부)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200% ○ (6개월 초과 납부) 300%

(2) 개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2. 조세불복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불복 각하 사유 (국기법 §65①)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현재 시행령에 별도 규정 없음 <추 가>	☐ 각하 사유 명확화(국기령 §52의2) ○ (좌 동) ○ 조세불복 각하 사유 신설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의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 -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청구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조세불복 각하 결정에 대한 기준 명확화

23.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확대(국기령 §6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 사건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청구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외의 것으로서 이미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 <추 가>	☐ 대상 추가 ○ (좌 동) ○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개정이유

- 조세심판 효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의6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 납세자 성명 및 주소 ○ 조사기간 ○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 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좌 동)

(2)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5. 부분조사 사유 확대(국기령 §63의12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분조사* 사유 (국기법 §81의11 및 국기령 §63의12) * 동일 세목 및 동일 과세시간에 대해 2회 초과 금지(아래 ①, ②는 제외) ① 경정청구 처리, 환급금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조세불복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④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⑤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이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 가>	☐ 부분조사 사유 확대 (국기령 §63의12) ○ (좌 동) -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

(2) 개정이유

- 세무조사 효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26.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의1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 ○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 수정신고 안내 ○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 항목 명확화 ○ (좌 동) - 근거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등 포함 ○ (좌 동) ○ (좌 동) ○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27.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6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금액 ○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탈루세액</th><th>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td><td>20%</td></tr> <tr> <td>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td>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td></tr> <tr> <td>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td><td>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td></tr> <tr> <td>30억원 초과</td><td>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td></tr> </tbody> </table> <신 설>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 ○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table border="1"> <thead> <tr> <th>납부금액</th><th>지급률</th></tr> </thead> <tbody> <tr> <td>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td><td>20%</td></tr> <tr> <td>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td>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td></tr> <tr> <td>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td><td>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td></tr> <tr> <td>30억원 초과</td><td>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td></tr> </tbody> </table>	납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납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기 ○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심판·소송 등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 포상금 지급절차 신설 ① 국세청장은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탈루세액이 납부된 경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절차 등 관련 내용 통지 ② ①의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 가능 ☐ 포상금 지급시기 조정 ○ 포상금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2) 개정이유

-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 탈세제보 유인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탈세제보를 하는 분부터 적용

28.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국기령 §66①, 관세령 §141의2, 국징령 §105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국기령 §66①, 관세령 §141의2) * 채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채납액 2억원 이상인 채납자 등 ○ 채납액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채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채납한 경우	☐ 조문이관 및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 조문이관은 국기령→국징령만 해당 (관세령은 이관 없음) ○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채납액의 50% 이상 납부 ○ (좌 동)

(2) 개정이유

- 고액·상습채납자 채납액 납부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2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67의3 신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 (이용자 요청)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요청 * 기재내용 : 표본자료 이용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 (제공기한)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 (제공방법)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

(2) 개정이유

-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3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1.8%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 연 1.8% → 1.2%

(2) 개정이유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국세징수법 새로 쓰기
 - ①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 ② ‘채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변경
 - ③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
 - ④ 매수인측 용어 정비
 - ⑤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2. 세법상 납부기한 및 채납 정의 신설
3.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4. 압류, 수색, 질문·검사 시 집행절차 개선
5. 압류금지 재산의 정비
6.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
7. 압류 후 추심·매각의 착수시기 신설
8. 공매 중지·채납처분 중지를 압류 해제로 일원화
9.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의 배분의 실시 명문화
1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14.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
15.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
16. 국세채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신설
1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국세징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758호(2020.12.29.)
-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 기획재정부령: 제835호(2021.3.16.)

1. 국세징수법 새로쓰기

①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징수법의 편제 ○ 3장* 15절 104조 * 총칙(제1장), 징수(제2장), 체납처분(제3장)	☐ 국세징수법의 편제 개편 ○ 4장* 12절 13관 115조 * 총칙(제1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제2장), 강제징수(제3장), 보칙(제4장)
☐ 체납처분 장(章)의 편제 ○ 내용을 12개의 절(節)*로 평면적으로 단순 나열 *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강제징수 장(章)의 편제 개편 ○ 6절* 13관으로 재구성 * 제1절 통칙 제2절 압류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절 청산 제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제6절 압류·매각의 유예 - 장, 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통칙 신설 - 절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절(節) 재구성 - 압류, 매각 절(節)의 하위 목차로 관(款)을 도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배치
☐ 총칙 성격이 아닌 규정* * 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체납자료의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등 활용,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 총칙에서 분리 → 보칙 장(章)을 신설하여 이관

(2) 개정이유

- 편제를 전면 개편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

②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최고’를 ‘촉구’로 변경
(국징법 §3, 62⑤, 76⑤, 85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 체납처분 ○ 최고	☐ 용어의 순화 ⇒ 강제징수 ⇒ 촉구

(2) 개정이유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순화

③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국징법 §7,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의 이행 요구 ○ (주된 납세자) 납세의 고지 ○ (종된 납세자)* 납부의 통지 *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 ○ 납부고지
☐ 체납 이후 체납처분에 착수하기 전 납부 재촉 ○ (주된 납세자) 독촉 ○ (종된 납세자) 최고	] ○ 독촉

(2) 개정이유

- 불필요하게 다른 표현 사용으로 인한 혼란 방지

④ 매수인측 용어 정비(국징법 §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수인측을 표현하는 용어 ○ 입찰자* *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 ○ 낙찰자*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의 입찰자 ○ 매수인*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정해진 낙찰자	☐ 직관적인 용어로 변경 ⇒ 매수신청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 ○ (좌 동)

(2)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과 같이 직관적인 용어로 명확화

⑤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국정법 §11, 30, 104, 105, 11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23조의2(채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 실제 위탁대상은 재산조사·상담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징수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11조(채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 제30조의2(채납처분의 위탁) ※ 고액·상습채납자의 수입물품에 국한됨에도 일반적인 위탁으로 오인될 우려	☐ 제30조(고액·상습채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실제 대행 대상은 감정·입찰기일의 진행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매각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 제85조의2(채납처분 유예) ※ 실제 유예 대상은 압류·매각에 국한됨에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음	☐ 제105조(압류·매각의 유예)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임	☐ 제112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 개정이유

- 조문 제목의 구체화·명확화

2.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 정의 신설(국징법 §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부기한 ○ (법정납부기한)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세율을 정하는 법, 국기법, 조특법, 국조법 (지정납부기한)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 다만, 고지서에 기재할 납부기한을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3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25, 10.25 등), 종부세 부과고지(12.15) → 해당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간주
<신 설>	☐ 체납 ○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 다만, 舊 가산금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가산세 납세의무 확정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 * 본세의 지정납부기한 후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체납자 ○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체납자 ○ 국세를 체납한 자

(2) 개정이유

- 용어 정의 신설을 통해 납세자 혼란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적용

3.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국징법 §13, 국기법 §6, 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납부 이행기한 연장 ○ (법정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 ○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통합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 ※ 적용대상 - 법정납부기한 -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2) 개정이유

- 요건·절차·효과가 유사한 양 제도를 통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적용

4. 압류, 수색, 질문·검사 시 집행절차 개선 (국징법§38, 국징칙§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공무원의 압류, 수색, 질문·검사시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대상 ○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 신분증명서* *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추 가>	□ 제시 대상 개선 ○ (좌 동) - 공무원증 ※ 신분증명서 서식 삭제 ○ 압류·수색 등 통지서* ** * 집행 유효기간·장소·이유 등 압류·수색 등 관련 정보 기재 ** 서식 신설(시행규칙 별지 34호서식)

(2) 개정이유

- 현행 신분증명서의 보안성 보완 및 수색, 질문·검사 등에 대한 체납자의 알 권리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5. 압류금지 재산의 정비(국정법 §4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금지 재산 ○ 체납자·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3개월간의 식료, 장례·학업에 필요한 물건 등 ○ 사망·상이급여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소액금융재산 <추 가> ※ 현행은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 ○ 의료·조산업·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그 밖의 재료 <추 가> <추 가> ☐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될 다른 재산 제공시 압류 금지 ○ 농업·어업·직업·사업에 필요한 기구·물건 등	☐ 압류금지 재산 (좌 동)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어업·직업·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 기구·물건 등 <삭 제> ※ '직업·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수적 기구·물건'에 통합 ○ 체납자·동거가족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 및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법령에 따라 설비한 재해 방지·보안 시설 <삭 제> ※ '압류금지 재산'으로 조정

(2)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재산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6.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 (국정법 §48④, §76④, §7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민집법 §190는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 가능(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체납자와 그 배우자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해 압류 ※ 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반영 ○ (요건)* 체납자 단독점유 또는 부부 공동점유하는 경우 * 배우자 단독점유시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절차에 의함 ○ (효과) 동산·유가증권의 압류 절차에 의해 물건 전체의 압류 가능
<신 설>	☐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 압류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 (우선매수권)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가능 ○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2) 개정이유

-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7. 압류 후 추심·매각의 착수시기 신설(국징법 §52③④, §55④, §6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채납자 재산 압류 후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시기 ○ 원칙 : 1년 이내 ○ 예외 : 법률상·사실상 공매 등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개정이유

- 조속한 강제징수 진행을 통한 채납자 권익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8. 공매 중지·채납처분 중지를 압류 해제로 일원화(국징법 §5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압류 해제 ※ 압류 해제시 공매 취소(국징법 §69①.1호)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가 있는 경우 ☐ 공매 중지 ※ 공매 중지시 압류 해제(국징법 §53①.1호) ○ 매각결정 기일 전 채납액을 완납한 경우 ○ 여러 재산 중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채납액 전액에 충당될 경우 남은 재산의 공매의 경우 ☐ 채납처분 중지 ※ 채납처분 중지시 압류 해제(국징법 §82④) ○ (사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 선순위 담보채권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는 경우 - (절차)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심의 & 1개월간 공고	☐ 압류 해제로 일원화 ○ 납부, 충당된 경우(1호) ○ 부과가 취소된 경우(2호) ⇒ 1호의 '납부'에 통합 ○ (좌 동) (3호) ○ (좌 동) (4호) - (절차)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심의

(2) 개정이유

- 현행의 중첩적·순환적 구조를 해소하여 단순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적용

9. 2차 공매통지 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국징법 §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통지 송달의 효력 발생시기 ○ (1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 (2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으로 공매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공고	☐ 2차 공매공고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신주의 도입 ○ (1차 공매공고) (좌 동) ○ (2차 공매공고) - 채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도달한 때 - 공유자, 공매재산에 관한 권리자*: 발신한 때(1차 공매통지가 도달된 경우로 한정)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2) 개정이유

-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국징법 §88)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매 취소 ○ 아래 취소사유 발생시 공매의 임의적 취소 ① 압류 해제 ② 공매대행 의뢰 해제 ③ 체납처분 유예 ④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 공매 취소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공매	☐ 공매 취소·일시정지로 분리 ○ (공매 취소) 필요적 취소 ① 압류 해제 ② 공매대행 의뢰 해제 ○ (공매 일시정지) ① 압류·매각의 유예 ②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u>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u>) - 공매 일시정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공매 속행

(2)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국징법 §99③④, §10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분계산서의 확정 ①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가 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 有 - 이의가 미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도 無 ②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신 설>	□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 배분계산서의 확정 ① 이의 미완결 부분의 확정 제외 - (좌 동) - 배분계산서 중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확정 ② (좌 동) ○ 이의 미완결로 배분 유보된 부분 - 이의한 자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 증명서류* 미제출시 이의 취하 간주

(2)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적용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의 배분의 실시 명문화 (국정법 §101, §10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신 설> ○ 채납자 등에게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 설>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의 구체화 ○ 정지조건·불확정기한부 채권인 경우 ○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 배분에 대한 불복 증명서류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내에 제출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채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예탁사유 소멸시* 예탁금을 지급(당초의 배분계산서대로)하거나 추가 배분(당초의 배분계산서를 변경) * 정지조건 성취, 배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확정 등 ○ (추가 배분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안한 자를 위하여도 배분계산서를 변경 -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만 이의제기 가능

(2)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적용

**1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국기법 §7, §29~34, §85의5①.1호, 국징법 §17, §18~23, §11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국징법 §13②) ○ (요건) ❶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 ❷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효과) 양도담보 종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적납세의무 부담	☐ (좌 동)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규정)
☐ 송달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국기법 §7) ○ 송달지연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한 때 이미 기한이 경과 또는 14일 내 도래시 기한연장 간주 - (원칙)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예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는 단축된 기한(단축된 기한 전 도달시) 또는 도달한 날(단축된 기한 후 도달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부기한 연장은 국징법에서 일괄 규정)
☐ 납세담보(국기법 §29~34) ○ 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 변경·보충, 납부·징수, 해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 감안)
☐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국기법 §85의5①.1호) ○ (요건) 채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효과) 채납자의 인적사항, 채납액 등 공개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고액·상습채납자의 경우 국징법에서 일괄 규율)

(2) 개정이유

- 법 체계 정합성 제고

14.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국징법 §43, §48, §50, §78, §9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국징법 통칙 24-0-22	☐ 압류의 처분 제한의 효력 ○ (채납자) 재산의 양도·제한물권의 설정·추심 등 처분 금지 ○ (제3채무자*) 채납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권·무체재산권 등 압류시 해당 채권 등의 채무자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1	☐ 동산·유가증권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2	☐ 금전 압류의 효과 ○ 그 한도에서 채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신 설> ※ 민사집행법 §91, 국징법 통칙 79-77-1	☐ 공매재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존재 시 ○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분해야 공매 가능 ○ 공매에 따른 처리 -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권) 소멸 - (용익권) 소멸(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인수(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 (유치권)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변제할 책임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15.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국징령 §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문매각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 전문매각기관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 시행령 상향입법 ○ (매각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 지정·공고일부터 2년간 ○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매각대행 의뢰시 전문매각기관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지정 취소) 지정·공고된 기관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대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해당 기관 임직원이 매각대행과 관련 뇌물죄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2) 개정이유

- 국세청 고시로 규정된 전문매각기관 관련 중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

16. 국세채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신설(국장령 §79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민간위원 임기 ○ 2년* * 연임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신 설>	☐ 연임제한 근거 신설 ○ (좌 동) ○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2)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당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21.2.17.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봄

17.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등
(국징령 §105②, 국기령 §66①, 관세령 §14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국기령 §66①, 관세령 §141의2) * 채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채납액 2억원 이상인 채납자 등 ○ 채납액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채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가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채납한 경우	☐ 조문이관 및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 조문이관은 국기령→국징령만 해당 (관세령은 이관 없음) ○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채납액의 50% 이상 납부 ○ (좌 동)

(2) 개정이유

- 고액·상습채납자 채납액 납부 유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관 세 법

[관세법]

【개정된 주요내용】

1.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2.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
3.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4.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5.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
6.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7.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
8.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
9.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10.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11.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13.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
14.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15.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
16. 보세운송업자 보고사항 추가
17. 통관 관련 제도 개선
 -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
 -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
 -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18.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19. 탁송품 통관절차 개선
20.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
21.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
22.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23. 관세행정을 위한 연구개발 근거 마련
24.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25. 관세법령 용어 정비
26.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27. 항공운임 관세특례 법령화
28. 통상운임 의미 및 적용대상 명확화
29.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
30.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31. 원심 본조사 기간 추가 연장
32. 국내산업 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 제외
33. '덤핑' 용어의 WTO 협정 합치
34. 구두 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
35. 재심 요청요건 WTO 규정에 합치
36. 상계관세 규정 정비
3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38.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확대
39.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규정

- 40.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마련
- 4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 42.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 43. 특수관계자가 생산한 생산지원비용 산출방법 개선
- 44.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 확대
- 45.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 46.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 47.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 48.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 확대
- 49.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 절차 법제화
- 50.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 5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한시 확대
- 52. 여행자 신체 착용·휴대물품 기본면세범위 제외 명확화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자】

- 법률: 제17649호(2020.12.22.)
- 대통령령: 제31454호(2021.2.17.), 제31291호(2020.12.29.)
제31088호(2020.10.7.)
- 기획재정부령: 제842호(2021.3.16.), 제820호(2020.12.29.)
제809호(2020.10.7.)

1.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2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 양허세율 적용을 위해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 회신받은 날부터 1년	☐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 회신받은 날부터 1년 → 회신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2) 개정이유

-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2.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 §4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 필요, 단 다음 요건 충족시 담보 면제 - 체납액 납부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최근 3년 내 「관세법」 등* 처벌사실이 없을 것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신 설>	☐ 법령 준수 요건 강화 및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신설 ○ (좌 동) - 대상 법률* 추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추가 ○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가능

(2) 개정이유

- 체납처분 유예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86⑦, §87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 ○ 3년 →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 분류의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연장 ○ 3년 → 재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2) 개정이유

- 유효기간 경과시 효력상실 여부에 대한 혼란방지 및 안정적인
 이고 예측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서비스 제공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4.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관세법§89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대상 ☐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 <추 가>	☐ 면세대상 추가 ☐ (좌 동) ☐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물품

(2) 개정이유

- 국가기관이 업무용 항공기·헬리콥터 등의 제조·수리용 물품 수입 시 면세 허용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서울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관세법 §89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 (지정권자) 세관장이 지정 ○ (지정효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 에서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 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 면제 <신 설>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근거 마련 ○ (좌 동)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 현행 고시에서 상향
입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98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수출감면 대상 ○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국내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추 가 >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 (좌 동) ○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허용 *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2) 개정이유

- 수출기업 등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96, 관세칙 §48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청 고시에 규정	☐ 면세기준 법령화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 항공기승무원: 150달러 물품 등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8.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 (관세법 §118⑥)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 설 >	☐ 결정기간 합리화 ○ (좌 동)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산입 * 심사청구서의 내용·절차 등의 하자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2) 개정이유

- 과세전적부심사 운영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심사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9.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관세법 §124, §12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판단시 재심의 요청 가능

(2) 개정이유

- 관세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관세법 §136③, 관세령 §15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입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 목록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 탁송품 운송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법규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실적을 가진 업체 ☐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 추 가 >	(좌 동) ☐ 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 (좌 동) ○ 탁송품 운송업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법규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실적을 가진 업체

(2) 개정이유

-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 감시·단속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시행

11.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 (관세법 §165의2,3,4, §275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대여 금지 ○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추 가> <신 설> <신 설>	☐ 명의대여 금지 확대 ○ (좌 동) ○ 명의를 대여 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세사의 의무 규정 ○ 관세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 금품 제공 및 알선 금지 등

(2) 개정이유

- 보세사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관세법 §17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특허기간 중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되어 특허 취소 <추 가> ○ 다음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추 가>	☐ 결격사유 추가 ○ (좌 동) ○ 사유 추가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 사유 추가 - (좌 동) - 전자문서 위·변조죄

(2) 개정이유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위반사실 분부터 적용

13.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 (관세법 §176조의2④, 관세칙§68조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추 가>	☐ 감경근거 신설 ○ (좌 동)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피해 발생 시 감경 가능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 (대기업)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 ~1조원) 0.5%, (1조원 이상) 1.0% ○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추 가>	☐ 특허수수료 감경 ○ <좌 동> ○ (감경) '20.1~'21.12월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산출액의 50% 감경

(2)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관세법 §18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보고의무자(§179) ☐ 운영인·상속인·승계법인	☐ (좌 동)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182) ☐ 운영인·상속인 < 추 가 >	☐ 반출의무자에 승계법인 추가 ☐ (좌 동) ☐ 승계법인

(2) 개정이유

-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효율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15.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
(관세법 §206, 관세령 §21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휴대품 유치사유 ○ 통관시 필요한 허가·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추 가> <추 가>	☐ 유치사유 추가 ○ (좌 동) ○ 관세미납물품 및 지재권 침해물품 등 법 의무사항 위반물품 ○ 사회안전·국민보건 危害물품 - 식약처장 등 관계기관장의 부적합통보·통관제한 요청 - 성분·규격 불명으로 관계기관의 확인 등 필요 물품 - 기타 유해성분 포함 식품·의약품 등 유치필요 물품
☐ 휴대품 일시예치 ○ 수입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예치 가능 <신 설>	☐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 ○ (좌 동) ○ 단, 변질·손상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일시예치 제한 가능

(2) 개정이유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유치 또는 예치하는 물품부터 적용

16. 보세운송업자 보고사항 추가(관세법 §222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운송업자 보고사항 ☐ 보세운송업자 보고 사항 -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 <추 가>	☐ 보세운송업자 보고사항 추가 ☐ (좌 동) -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2) 개정이유

- 보세운송업자 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추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17. 통관 관련 제도 개선

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237)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관의 보류 ○ 통관보류 사유 -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국세채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 위반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위반 - (좌 동) - 국세채납자 → 국세·지방세 채납자 ○ 세관장은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화주 등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2) 개정이유

- 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탁한 채납자가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
(관세법 §26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 (사유) 「관세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조치내용)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진행 정지	☐ 운송수단 제한 사유 추가 ○ 「관세법」 집행 → 「관세법」 및 조약·국제법규 집행 ○ (좌 동)

(2) 개정이유

- 조약·국제법규의 이행력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③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관세법 §14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하역 제한 ○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 가능 < 추 가 >	☐ 하역 제한 강화 ○ (좌 동) ○ 국민 보건·사회안전 위해(危害)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도 제한 가능 ※ 하역장소·통로, 기간제한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2) 개정이유

- 위해물품 통제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국내 입항하는 국제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④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관세법 §238, 관세령 §24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 (대상물품) 다음 중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 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 신 설 > < 신 설 >	☐ 반입명령 제도 보완 ○ (좌 동) ○ (반입의무자)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 ○ (반입명령 대체)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2) 개정이유

-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 합리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18.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관세법 §25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의 취하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 승인을 받아 취하	☐ 취하신청에 대한 승인기간 신설 ○ (좌 동) ○ 세관장은 취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 10일 이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2) 개정이유

-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탁송품 통관절차 개선(관세법 §254의2, 관세령 §258의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탁송품 통관장소 ○ 지정장치장 및 자체시설 <추 가>	☐ 통관장소 확대 ○ (좌 동) ○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 - 단, 감시·단속상 지장이 없고, 간이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 하는 경우
☐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신 설>	☐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의 근거 명시 ○ 관세청장이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시 * ①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② 세관장과 동 운송업자간 협약체결 ③ 세관장의 동 운송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2) 개정이유

- 탁송품의 신속 통관 및 효율적 감시·단속 도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20.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관세법 §264의10)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관세청장의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공유 요청 ○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2) 개정이유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관세법 §267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 (요청자) 세관공무원 ○ (범위) 해상에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협조자) 육·해·공군 부대장, 경찰·해양경찰관서의 장 ○ (검사대상) 선박	☐ 요청자 변경 및 요청범위 확대 ○ (요청자) 세관장 ○ (범위)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좌 동) ○ (검사대상) 운송수단(항공기·차량 포함)

(2) 개정이유

- 밀수 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22.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 (관세법 §277④, 관세령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세구역 물품 반입·반출 관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물품 반입·반출 미신고자 <추 가>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좌 동)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 한 자 *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부과 기준 적용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width: 100%;"> <thead> <tr> <th>위반 횟수</th><th>과태료</th></tr> </thead> <tbody> <tr> <td>1차 위반</td><td>50만원</td></tr> <tr> <td>2차 위반</td><td>100만원</td></tr> <tr> <td>3차 이상 위반</td><td>200만원</td></tr> </tbody> </table>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2) 개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적용

23. 관세행정을 위한 연구개발 근거 마련(관세법 §322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관세행정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 - 연구개발사업을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위탁 및 예산지원 가능

(2) 개정이유

- 세관 업무의 고도화·전문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24.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327, 관세령 §285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 직접 교부 ☐ 인편 ☐ 우편 ☐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추가 ☐ (좌 동) ☐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

(2) 개정이유

-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5. 관세법령 용어 정비

(관세법 §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 적하목록(積荷目録) ○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 선용품, 기용품 ○ 기착(寄着) ○ 대서 ○ 출항면장(免狀) ○ 가보호조치 ○ 식전용품(式典用品) ○ 견품, 상용견품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2) 개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26.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유량조절기 : 3% ○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전기식 등 기타 유량 조절기 관 세율 인하 ○ (좌 동) ○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 3%

(2) 개정이유

-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수입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항공운임 관세특례 법령화
(관세령 §20③,⑥, 관세칙 §4의3②,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선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보험료 산출 <신설> * 고시 미규정 사항 신설 <신설> * 고시 제12조제1항 규정 사항	☐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보험료 산출 ☐ 항공운임 특례 적용시 자료 제출 절차 마련 ○ 가격신고시 항공운임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세관장에게 제출 *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료제출 제외 ☐ 항공운임 특례 물품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등으로 20만원 이하의 물품 ○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 반입하는 물품 ○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20만원 이하인 물품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변경 또는 항공기로 운송방법 변경하여 긴급하게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신문 등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 우리나라 거주자가 자가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이사화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 자기 소유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 여행자 휴대품 ○ 항공사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반입하는 항공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 일반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 일반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거래처 또는 운송수단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	--

<신설> * 고시 제12조제2항 규정 사항	☐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시 운임 산출 방법 ○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선편일반 국제 소포 요금표(예: 중국에서 10kg 물품 반입시 운임은 34,000원) - (대상) 무상 반입 견품, 여행자 휴대품 등 ○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 (대상)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운송하는 물품 등 ☐ 항공운임 관세특례 적용시 보험료 산출 방법
---	---

(2) 개정이유

- 특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관세청장이 공고로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공고 요건 등을 삭제하고 적용대상 물품의 요건을 명확화
- 또한, 수입자가 항공운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가격신고시 특례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의무 신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이전에 고시로 적용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8. 통상운임 의미 및 적용 대상 명확화(관세령 §20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결정 ○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 고시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 규정사항 ○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 ○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결정 ○ 수입자의 운송수단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 (좌 동) ○ (좌 동)

(2) 개정이유

- 현행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통상운임 적용 물품을 시행령으로 법령화하여 적용 대상 및 통상운임 명확화(개선)
 - 현재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 없고, 운송사업자의 통상운임*을 적용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 * 해운동맹 운임표 등 선박 또는 항공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

29.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 확대(관세령 §31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 요구 * 고시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사항 ○ (고시) 15일 이내* * 해외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 요구 ○ 일반물품: 20일 이내 ○ 특수관계물품: 30일 이내

(2) 개정이유

-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보완 요구기간을 품목분류·원산지 사전심사의 보정기간과 같이 20일로 기간 확대
- 특수관계물품의 자료 제출시 해외 본사 연락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행 15일+15일(연장)에서 30일로 기간 확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 보정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30. 이해관계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강화 (관세령§59⑥, §60③, §64②⑦, §70②, §71②④, §73⑥, §74③, §78②⑦, §84②, §85②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 무역위는 조사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59⑥, §73⑥) <단서 신설> ☐ 덤핑 및 보조금 등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통지 (§60③, §74③) ○ 조사·재심사 개시결정시 공급국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단 신설> ☐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 비밀 취급 요청 자료 (§64②, §78②) ○ 조사당국은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청에 응하여야 함 (§64⑦, §78⑦) ☐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조사개시 전 조사신청서 공개금지 명시 ○ (좌 동) - 조사개시 결정 후 통보 ☐ 통지시 조사신청서 함께 제공 ○ (좌 동) -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 ☐ 비밀취급 요청자료 대상 확대 등 ○ 비밀 취급 요청 자료에 서면 제출된 구두 정보를 추가 ○ 자료열람요청을 자료제공요청으로 개정 ☐ 재심사 요청서 제공 명시

○ 공급국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재심사개시 결정 사항 통지(§70②, §84②) <후단 신설>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71②, §85②) <신 설, §71④, §85④>	○ (좌 동) - 조사신청서를 함께 제공 ☐ 통지·공고대상 확대 ○ ‘재심 최종판정’시 추가 * 현재 통지 중으로 시행령에 반영, (원심 최종판정은 시행령에 既반영) ○ 조사당국에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	---

(2)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의 정보접근권 및 절차적 이익방어권 보장을 WTO 규범에 합치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시행 당시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31. 원심 본조사 기간 추가 연장(관세령§61⑦, §75⑦)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덩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부과조치	☐ 원심 본조사 기간 추가 연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월의 범위 내에서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부과조치 * (본조사) 3+2월 → 3+2+2월

(2) 개정이유

- 특별한 사유로 부과조치 기간을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內 → 18개월內로 연장할 수 있는 바, 연장된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도 추가 연장(2개월) 가능하도록 명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2. 국내산업 피해 평가지표에서 '기술개발' 제외 (관세령§63①, §77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하는 증거* 중 하나로 기술개발 명시 *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가격하락 또는 인상억제의 효과를 포함한다) ·이윤·생산성·투자수익·현금수지 ·고용·임금·성장·자본조달·투자능력· <u>기술개발</u>	☐ '기술개발' 삭제

(2) 개정이유

- WTO 협정상 산업피해 판정지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술개발'을 삭제하여 논쟁 발생 여지 차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3. ‘덤핑’ 용어의 WTO 협정 합치(관세령§6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 무역위원회는 덤핑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 덤핑을 덤핑물품으로 수정 ○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외의 다른 요인으로서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

(2) 개정이유

- 불필요한 오해 발생 방지 및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용어 통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4. 구두 정보의 증거력 인정절차 도입(관세령§64⑧, §78⑧)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진술 및 협의 기회 제공 <단서 신설>	☐ 의견 진술 등 구두 정보의 증거 능력 인정기준 신설 ○ 공청회 등에서 진술한 내용은 회의 후 7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만 해당 자료 참고

(2) 개정이유

- 구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구두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5. 재심 요청요건 WTO 규정에 합치(관세령§70①, §84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덤핑방지관세·약속의 재심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재심사 여부 결정	☐ 재심 요청요건을 WTO 규정에 합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재심사 여부 결정

(2) 개정이유

- ☐ 재심 요청요건을 WTO 규범과 합치하는 수준으로 완화 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6. 상계관세 규정 정비(관세령 §73②③⑥, §74④, §75④⑦⑧⑩, §79④⑤⑥, §81⑤, §84②③⑥⑧⑪⑫)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계관세의 부과요청 <신 설, §73②> <신 설, §73③> ○ 조사신청시 조사신청서 및 관계증빙자료 첨부(§73⑥)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개시 <신 설, §74④>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미소물량이거나 피해가 경미할 경우 본조사 종결 <후단 신설, §75④> ○ 본조사 결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75⑦)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일의 범위 내 연장	☐ 부과요청 절차 보완 ○ 주무부장은 관세청장에게 검토 요청 가능 ○ 관세청장은 주무부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체 판단하에 검토 및 통지 가능 ○ 일부 용어 정비(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 동종물품 등) ☐ 조사 전문성 제고 ○ 조사대상물품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 ☐ 조사 절차를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정비 ○ (좌동) - 종결시 관련 내용 관보 게재 ○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8개월 내 연장

<신 설, §75⑩> □ 상계관세의 부과 <신 설, §79④⑤⑥> □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후단 신설, §81⑤> <신설, §81⑤ 1호 및 2호> □ 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 재심사 필요 여부 결정(§84②) ○ 부과 중인 상계관세의 이행 여부에 대한 연례재검토 가능 <후단 신설, §84③> ○ 본조사 결과 접수일로부터 1개월내 조치, 필요시 20일 내 연장(§84⑥) <신 설, §84⑧>	○ 그외 조사 절차 관련 사항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 신규공급자 부과 규정 추가 ○ 신규공급자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부과 유예 □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 ○ 잠정조치 4개월 기한 적용 ○ 잠정조치 내용 구체화 - (부과내용 既定) 상계관세 부과 - (부과내용 未定)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 □ 재심사절차 정비 ○ 재심시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 이해관계인 통지 및 관보 게재 ○ (좌동) - 관세청에서 재검토에 필요한 사전기초자료를 작성 ○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 ○ 재심사기간중 부과된 물품에 대한 정산 규정
---	--

<신 설, §84⑪>	○ 재심사 요청 철회 규정
<신 설, §84⑫>	○ 자료협조 요청, 부과 조치, 약속 등에 관한 원심절차 준용

(2) 개정이유

-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 수입으로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정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이후부터 적용

**37.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④, §94, FTA관세령 §3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농림축산물 양허세율·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 수입신고 수리 전	☐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보세구역 반출전에 한함)

(2)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영 시행 전에 수입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38.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확대(관세령 §141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 채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채납액 2억원 이상인 채납자 등 ○ 채납액 30% 이상 납부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	☐ 명단공개 제외 사유 축소 ○ 최근 2년 이내에 미납된 채납액의 50% 이상 납부 ○ (좌 동)

(2) 개정이유

-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명단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39. 장치기간 경과물품 매각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규정(관세령 §222⑦, 관세칙 §73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각 물품의 예정가격과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함 <신설> * 고시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 ①변질·손상물품 및 ②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물품 →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기준 적용	☐ 매각 물품의 예정가격과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함 ☐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 및 매각 예정가격 결정방법 ○ (일반) 거래가격+ 관세 등 제세 ○ (여행자휴대품 등) 제7조의3*에 따른 가격 + 관세 등 제세 ○ (변질·손상물품 등) ①변질·손상물품은 §7의2** 가격 + 관세 등 제세, ②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물품은 §7의5①*** 가격 + 관세 등 제세 ○ (수출조건 매각 물품) 예정가격 - [관세 등 제세, 운임, 보험료] ○ (기타) 합리적인 방법

*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신고인의 결제금액, 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 등)

**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재결정가격, 정상가격·수리비용 또는 보상액 등)

*** 중고물품 과세가격(감정가격, 신품 가격에서 가치 감소분 공제 등)

(2) 개정이유

- 변질·손상된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

40.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마련(관세령 §231)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 범위 ○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2) 개정이유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7.1. 이후부터 적용

41.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관세령 별표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24개 기관, 57종 자료 제출 중)	☐ 기존 자료 제출시기 변경 및 신규 자료 추가
○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취득권의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 연2회(매년 4.30일, 10.31일) < 추 가 > < 추 가 >	○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취득권의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 월1회(매월 5일)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종류별 계약체결 자료 : 연2회(매년 1.31일, 7.31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가 산정·지급 자료 : 연2회(매년 4.30일, 10.31일)

(2) 개정이유

- 과세자료 적기에 확보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제출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42.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관세령 별표5)**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현장 인도 제한 조치 위반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 기준 적용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2) 개정이유

- 면세점 물품의 국내 불법유통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2.17.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특수관계자가 생산한 생산지원비용 산출방법 개선 (관세칙 §4③)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 생산지원비용 ○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구입·임차 비용과 운송비 ○ 물품·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생산비용과 운송비 ○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운송비 * ①일반 거래의 구입·임차 비용, ② 제조 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 (고시 제6조제2항 규정 사항)	☐ (좌 동) ○ (좌 동) ○ (좌 동) ○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구입·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생산비용과 운송비 -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구입·임차한 비용과 운송비

(2) 개정이유

-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생산하는 재료, 부분품 등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WTO 협정과 일치*하도록 현행 고시를 법령화

* 협정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

44. 항공보험료 관세특례 대상 확대(관세칙 §4의3④)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고시 제14조제3항 규정 사항	☐ 항공운임 관세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은 통상 보험료 적용 가능 ○ (대상확대) 관세특례 대상 중 일부*(1개) → 항공운임 관세특례 전체 물품 * 선박으로 운송 계약된 물품으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출자가 운송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만 통상 보험료 적용(관세청 고시)

(2) 개정이유

- 항공보험료 관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여 관세 경감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부터 적용

45.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규칙 §7의4 신설, 제도개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시 제33조 규정 사항	☐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순차적용) ○ 임차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가격 ○ 임차 수입물품 또는 동종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공개된 가격 ○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 (구매선택권 행사전 총 예상임차료 + 구매 선택권 행사시 지급 금액)의 현재가격 ○ 그 밖의 합리적인 가격(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고시) 계약서상 이자율 또는 11%	☐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 산정 방법 ○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특허권 등의 사용료, 별도 지급금액은 임차료로 취급 ○ 현재가격 계산시 이자율은 계약서상 이자율 또는 환급가산율(1.8%)

(2) 개정이유

- 고시에서 현재가격 계산을 위한 이자율 상한을 11%로 적용중이나, 이를 환급가산율*을 준용토록 현행화

* '21.1.1. ~ 3.15. 1.8%, '21.3.16~ 1.2%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

46.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규정 (규칙 §7의8 신설, 제도개선)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시 제37조 규정 사항 ○ (고시) 공제 미규정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는 송품장, 계약서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은 입증 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제

(2) 개정이유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과세가격 결정방법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부터 적용

47.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연 1.8%	☐ 이자율 조정 ○ 연 1.2%

(2) 개정이유

-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시행 당시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48.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 확대(관세규칙§15, §27)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 및 상계 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 ☐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 강화 ☐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

(2) 개정이유

- 덤핑방지 및 상계 조치 관련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의 기준을 WTO 규범과 합치되도록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부터 적용

**49.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 절차 법제화
(관세규칙 §15의2, §27의2 신설)**

(1)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제시 ☐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에 있어 주의의무 규정 ☐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에 대한 고지와 설명기회 제공 ☐ 이용가능한 자료 사용 이유를 판정결과 통지시 설명

(2)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 및 조사절차의 합법성 제고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료의 활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1. 시행 당시 영 제60조에 따른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를 개시한 경우 및 영 제70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를 개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0.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관세칙 §4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의 관세 면제 요건 * 군수품 중 전비품에 한하여 관세 면제(통상품은 관세 부과) ○ 수요기관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첨부	☐ 관세 면제 요건(필요서류, 서류의 발급주체) 명확화 ○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확인한 서류 첨부 - 해당 물품이 「군수품관리법」상 통상품이 아님을 확인 - 정부의 위탁을 받은 물품임을 확인

(2) 개정이유

- 위탁수입 군수품의 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세 감면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52. 여행자 신체 착용·휴대물품 기본면세범위 제외 명확화 (관세칙 §48②)

(1)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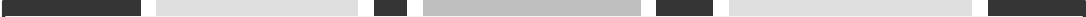
종 전	개 정
☐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 ○ 여행자 1명 휴대품으로서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내국물품 구매시 공제)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이 재반입되는 경우 600달러 산정시 제외 <추 가>	☐ 기본면세범위 산정 제외 추가 ○ (좌 동) - (좌 동) - 국내에서 반출된, 신체 착용· 휴대물품은 600달러 산정시 제외

(2) 개정이유

- 국내에서 반출된, 신체 착용·휴대물품은 기본면세범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3.16.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관 세 사 법

[관세사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2.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수입 등 제한
3.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4.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가
5.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일자】

- 법률: 제17815호(2021.1.5.)
- 대통령령: 제31785호(2021.6.22.)

1.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관세사법 §12,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 <신 설> <신 설>	☐ 명의대여를 받는 행위 및 알선행위 금지 신설 ○ (현행과 같음) ○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
☐ 벌칙(제2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 및 받은 상대방 <신 설>	☐ 명의 대여 알선자에 대한 벌칙 신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알선한 자

(2) 개정이유

-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5.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수입 등 제한 (관세사법 §13의6, 관세사령 §21의3, §21의4)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입 제한 *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관세사 ○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입 제한 - 다만, 민법에 따른 친족의 경우는 제외 * 수입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 · 국가기관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국가기관과 소속기관을 별도로 봄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한”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음 · 파견,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겸임발령 등으로 2개 이상 기관에 소속될 경우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 일시적 직무대리 등으로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 수입 등의 제한 대상 통관업의 범위 ① 관세사는 물론, 누구나 수행 가능한 다음의 통관업 (관세사법 제2조 제4호 및 7호)은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서 제외 ① 수출입 물품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신청 ②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상담·자문의 조언 ② 천재지변이나 전쟁·화재 등의 재난에 따른 수입 등의 제한 대상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수출입 물품 신고 등의 업무를 제외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개정이유

-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2.1.6. 이후 수입 등의 제한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3.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관세사법 §24의2, 관세사령 §28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관세청장은 관세사·관세법인 등록취소 등의 조치 시, 2주일 이내 다음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해당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 해당 관세사 소속 법인·사무소 등의 주소 및 명칭 ○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의 내용 및 사유 ○ 징계 등의 효력발생일(업무정지는 개시일 및 정지기간) ☐ 관세청장은 상기 공개 내용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세사회는 다음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등록취소 : 3년 ○ 업무정지 : 해당 업무정지 기간 (단, 3개월 미만 업무정지는 3개월) ○ 과태료 : 6개월 ○ 견책 : 3개월

(2) 개정이유

- 관세사 징계내용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및 공개 관련 세부사항 등을 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5. 이후 등록취소 또는 징계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별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 추가 (관세사법 §26의2)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관세사회 임직원 ☐ 자격검정 관련 기관의 임직원 <추 가>	☐ 공무원 의제대상자 추가 (좌 동) ☐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개정이유

-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5. 이후부터 적용

5.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관세사법 §29)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하여 벌칙 강화 ○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사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개정이유

-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예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1.1.5.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인 쇄	2021년	10월	일
-----	-------	-----	---

발 행	2021년	10월	일
-----	-------	-----	---

발 행 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	-----------------

인 쇄 처	신진기획(044-863-7887)
-------	--------------------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거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6)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